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해양수산부 소관
산림청 소관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이현종

목 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I.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1
1. 총수입 · 총지출	1
2. 세부사업 주요 변동 내역	2
II. 검토의견	3
1. 총괄	3
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	3
2)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에 대한 검토	8
3) 농어촌특별세 세입 증액분에 대한 검토	10
2.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6
1)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 보조금 지원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16
2)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등: 생산업체 용자지원과 농업인 직접 가격보조 사업을 비교 · 검토 필요	23
3)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수출기업 지원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보완 필요 등	30
4)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방비 확보 등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37
5) 농지이용관리지원 : 재정 운용의 계획성 제고, 면밀한 사업 관리 및 실질적인 정책 효과 제시 필요	47

6)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 사료비 안정을 위한 중장기적 방안 마련 필요 -----	54
7) 농식품소비기반조성 : 농축산물 할인지원 내역사업의 연례적 증액 변경 지양 필요 -----	58

[해양수산부 소관]

I.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66
1. 총수입 · 총지출 -----	66
2. 세부사업 주요 변동 내역 -----	67
II. 검토의견 -----	68
1. 총괄 -----	68
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 -----	68
2)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에 대한 검토 -----	71
2.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75
1) 수산물해외시장개척 :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차별화된 사업 설계 필요 -----	75
2)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 상한액 기준 재설정 및 소급 적용 방안 등 검토 필요 -----	86
3)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 등을 고려한 보조단가의 적절성 검토 필요 -----	97
4)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 사업관리 철저 및 사고 이월 재발 방지 필요 -----	106
5)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수산물상생할인지원 사업의 재원 배분 비율 재조정 필요 -----	113

[산림청 소관]

I.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26
1. 총수입 · 총지출	126
2. 세입 · 세출예산안	127
3. 세부사업 주요 변동 내역	128
II. 검토의견	129
1. 총 괄	129
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	129
2)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에 대한 검토	130
2.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32
1) 산림헬기 도입 · 운영	132
(가) 항공유 구입 예산은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과 안정적인 본예산 편성 필요	133
(나) 향후 유가 변동 상황을 고려한 사업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140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I.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1. 총수입 · 총지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추경 예산안’이라 함)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2026년 총수입 규모는 본예산 14조 6,555억원 대비 5조 1,223억원(35.0%) 증액된 19조 7,778억원임.

【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본예산(현계획) ¹⁾ (A)	제1회 추경안(B)	증감(B-A)	(B-A)/A
총수입	14,655,468	19,777,799	5,122,331	35.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2026년 총지출 규모는 본예산 20조 1,450억원 대비 2,658억원(1.3%) 증액된 20조 4,108억원임.

【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지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본예산(현계획) (A)	제1회 추경안(B)	증감(B-A)	(B-A)/A
총지출	20,144,980	20,410,760	265,780	1.3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 본예산 편성 이후 축산발전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이 있어 본예산과 차이가 존재함, 이하 같음

2. 세부사업 주요 변동 내역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14개 세출 사업을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0조 3,860억원 증액하였으나, 회계·기금 간 전출을 제외한 세출사업의 본예산 대비 증액규모는 8개 사업 2,658억원 규모임.

【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1회 추경안 세출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명	2026년			
		본예산 (현계획) (A)	제1회 추경안 (B)	증감 (B-A)	(B-A)/A
총 계		6,940,241	17,326,253	10,386,012	149.6
농특회계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26년)	-	7,824	7,824	순증
농특회계	농업자금이차보전	729,661	731,816	2,155	0.3
농특회계	무기질비료가격보조및수급 안정지원	15,600	19,800	4,200	26.9
농특회계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115,751	122,951	7,200	6.2
농특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전출	686,805	5,535,578	4,848,773	706.0
농특회계	축산발전기금 전출	145,500	210,500	65,000	44.7
농특회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	204,030	254,030	50,000	24.5
농특회계	농지관리기금 전출	500,000	558,771	58,771	11.8
농특회계	수산발전기금 전출	128,792	158,792	30,000	23.3
농특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 전출	3,793,367	8,861,055	5,067,688	133.6
지특회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34,075	304,705	70,630	30.2
농지기금	농지이용관리지원	13,944	72,715	58,771	421.5
축발기금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융자)	250,000	315,000	65,000	26.0
농안기금	농식품소비기반조성	122,716	172,716	50,000	40.7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II. 검토의견

1. 총괄

- 농림축산식품부는 회계·기금 간 거래 과정에서 복잡한 거래구조와 총계 기준 세출의 과다계상을 유발하는 중복거래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특별세의 세입 증액분 대부분이 지특회계의 지역지원계정으로 진출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목적인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등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

□ 정부는 최근의 환율 상승 및 고유가 등과 같은 대외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하였음.

기획예산처²⁾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26.2조원 규모)은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과 기업·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하였다고 함.

또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크게 ①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10.1조원), ② 민생 안정 지원(2.8조원), ③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6조원), ④ 지방재정 보장 등(9.7조원) 및 ⑤ 국채상환(1.0조원) 목적으로 구분됨.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 포함)은 최근 증권거래 활성화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수납액 증가³⁾에

2)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2조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마련’, ’26.3.31.

3) 직전 회계연도인 2025회계연도에도 농어촌특별세는 예산현액인 7조 4,153억원보다 1조 7,979억 500만원

따라 농특회계 내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규모가 증액(5조 1,223억원)되었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 포함)은 최근 중동 상황에 따라 고유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안정을 강화하며, 농식품 수출기업 물류 애로 등을 해소하고, 그 외 농지투기 근절 및 농촌 소멸 대응 등의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구성됨.

먼저,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고유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면세유 가격 보조 예산(78억원)을 편성하였음.

다음으로, 민생 안정을 목적으로 요소의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가를 대상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을 보조하고(42억원) 비료 업체의 원료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한편(22억원),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650억원),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을 지원하는 예산(500억원)을 편성하였음.

또한, 농식품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식품 수출바우처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72억원)을 편성하였음.

(24.2%) 많은 9조 2,132억 500만원이 수납된 바 있으며, 최근 들어 연례적으로 발생하였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재원 없는 예산이월 문제가 개선되었음

마지막으로, 최근의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지투기 근절 및 체계적 농지관리를 위한 농지 조사 예산(588억원)과 농촌소멸 대응 등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확대 예산(706억원)을 편성하였음.

□ 회계 및 기금별로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 1개 목에서 5조 1,223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의 경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개 사업(농업자금이차보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에서 213억 7,900만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개 사업(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706억 3,000만원,

농지관리기금 1개 사업(농지이용관리지원)에서 587억 7,100만원, 축산발전기금 1개 사업(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에서 650억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1개 사업(농식품소비기반조성)에서 500억원 등 8개 세부사업에서 총 2,657억 8,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음.

【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

(단위: 억원)

구 분	'26년 본예산 (현재회계)(A)	'26년 1회 추경안(B)	증감(B-A, %)
· 총수입(예산+기금)	146,555	197,778	51,223(35.0%)
· 총지출(예산+기금)	201,450	204,108	2,658(1.3%)
- 예산 일반지출	107,280	108,200	920(0.9%)
- 기금 일반지출	94,170	95,908	1,738(1.8%)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수출사업을 목적별로 살펴보면, 유류비 부담 경감 목적으로 1개 세부 사업이, 농업인 등 민생안정 강화 목적으로 4개 세부사업이, 농식품 수출 기업 지원 목적으로 1개 세부사업이, 현안 대응 목적으로 2개 세부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유류비 부담 경감 목적으로 ①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에서 농업용 면세유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예산(78억원)이 신규 반영되었음.

또한, 농업인 등 민생안정 강화 목적으로 ② 농업자금이차보전, ③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에서 비료의 원료인 요소의 공급망 불안에 따라 농가에게 비료 가격을 보조하고(42억원) 비료업체의 원료 구매자금을 지원(22억원)하는 예산과,

④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 축산농가에게 사료구매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예산(650억원)과,

⑤ 장바구니 물가 상승에 따라 소비자에게 농축산물 구매 시 그 할인을 지원하여 물가부담을 경감하는 예산(500억원)이 각각 추가 반영되었음.

다음으로, 농식품 수출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⑥ K-푸드 수출기업에게 물류·보험 등의 농식품 수출바우처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72억원)이 추가 반영되었음.

마지막으로, 최근의 현안 대응을 목적으로 ⑦ 농지투기 근절 및 체계적 농지관리를 위한 농지 일제 특별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588억원)과, ⑧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대상지역(5개 군)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706억원)이 각각 추가 반영되었음.

【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6년도			
	본예산 (현계획) (A)	제1회 추경안 (B)	B-A	증가내역
총 계	20,144,980	20,410,760	265,780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	7,824	7,824	농업용 면세유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부담 완화
농업자금이자 보전	729,661	731,816	2,155	비료업체 원료 구매자금 이자차액 지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15,600	19,800	4,200	비료가격 상승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농식품글로벌 경쟁력 강화	115,751	122,951	7,200	K-푸드 수출기업의 물류·보험 지원 등 농식품 수출마우처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34,075	304,705	70,630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대
농지이용관리 지원	13,944	72,715	58,771	농지 일제 특별조사 수행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	250,000	315,000	65,000	축산농가의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농식품소비기반 조성	122,716	172,716	50,000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예산 증액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에 대한 검토

□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4)에 따르면,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중 하나의 사유로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야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

한편,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목적적합성,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집행가능성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일반요건】

구분	요건	세부내용
1	목적적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2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3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4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5	연내집행가능성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42

4)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 정부의 추경예산안 편성 개요를 보면,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과 기업·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추경의 편성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국가재정법」상 대외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에 근거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제출한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 편성 추경예산안 역시 농업용 면세유와 무기질비료에 대한 가격보조, 축산농가의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농식품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보험 지원 등,

전반적으로 최근의 환율 급등 및 중동 상황 등의 대외여건에 따라 발생한 원료 공급망 불안, 유가·물가 상승 및 수출기업 애로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임.

다만, 세부적으로 개별 사업별로 실제 추경예산안 편성 적합성과 필요성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농어촌특별세 세입 증액분에 대한 검토

□ 「농어촌특별세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 농어촌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에 대하여 그 양도가액의 1만분의 15(0.15%)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여 세입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최근 증권거래 활성화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수납액 증가에 따라 농특회계 내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규모가 5조 1,223억 3,1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중 대부분인 5조 676억 8,800만원이 동일회계 내 구조개선사업계정으로 전출되었음.

그런데, 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사업(213억 7,900만원), 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4조 8,487억 7,300만원) 및 ③ 축산발전기금(650억원)·농지관리기금(587억 7,100만원)·농산물가격안정기금(500억원)·수산물발전기금(300억원) 전출로 편성되어,

구조개선사업계정으로 전입된 농어촌특별세 세입의 대부분인 4조 8,487억 7,300만원이 다시 지특회계 내 지역지원계정으로 전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런데, 이와 같은 농어촌특별세 세입 증액분의 회계·기금 간 거래 과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회계·기금 간 거래 과정의 중복거래로 거래구조가 복잡해지고 예산 총계규모가 과장되는 문제점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세입 증액분 중 지특회계·축발기금 등 타 회계·기금으로 전출되는 금액을 우선 구조개선사업계정으로 전출하는 계정 간 거래를 거친 후에, 이를 다시 타 회계·기금으로 전출하는 2 단계 구조로 회계·기금 간 거래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해당 금액을 직접 타 회계·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이 중복거래를 거치고 있음에 따라 거래구조가 복잡하게 되는 한편 총계 기준 세출 규모가 과다하게 계상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제1회 추경예산안 총계 기준 및 총수입·총지출 기준 규모 비교 】

(단위: 백만원, %)

구 분	총계 기준			총수입·총지출 기준		
	본예산 (현계획)(A)	추경 (B)	증감 (B-A)	본예산 (현계획)(A)	추경 (B)	증감 (B-A)
· 세입 (수입)	30,456,881	40,820,671	10,363,790 (34.0)	14,655,468	19,777,799	5,122,331 (35.0)
· 세출 (지출)	37,231,839	47,617,851	10,386,012 (27.9)	20,136,180	20,410,760	274,580 (1.4)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일부 재가공)

□ 둘째, 농어촌특별세 세입 증액분이 실제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특회계 세출사업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4135-300) 뿐으로 그 증액 규모는 706억 3,000만원에 불과하고,

어촌을 소관하는 해양수산부 역시 이번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지특회계 세출사업은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6136-300) 뿐이며 그 증액 규모는 29억 4,400만원에 불과함.

이에 따라 지특회계 전출액인 4조 8,487억 7,300만원 중 735억 7,400만원을 제외한 4조 7,751억 9,900만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외 분야에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기획예산처 소관 일반회계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전출”(8010-803) 사업이 4조 7,099억원 감액되었는바, 농특회계 전출은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임.

【 일반회계 中 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 전출 사업 제1회 추경예산안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예산	2026년			
		본예산(A)	제1회 추경안(B)	증감(B-A)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6,224,587	7,038,984	2,329,085	△4,709,899	△66.9

※ 자료: 기획예산처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출(농어촌회계법 제5조제2항) 】

호		목	
1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첨단 농림수산물기술 및 현장문제 해결기술의 개발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지원(출연으로 한정)
		다	어항(漁港) 건설
		라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2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증진과 소득 보전(補填)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농림어업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지원
		나	농산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
		다	농산어촌 여성 및 아동의 복지 증진
		라	농산어촌의 일자리 창출 지원
		마	농림어업인 및 농작물 재해 관련 지원
		바	농림어업인의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
		사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
3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농림수산계 학교의 설치·운영 지원
		나	농림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다	농림어업인에 대한 직업훈련 등 농림어업 외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라	농림어업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마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4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상하수도 정비, 주택 개량, 폐기물 처리, 외딴 곳과 섬 지역 교통 지원 및 그 밖의 생활편의 증진 등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나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다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위한 농산어촌의 거점지역 육성
		라	농산어촌의 문화·복지시설 지원
		마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지원
		바	농산어촌에 대한 투자유치 및 향토산업 지원
		사	농산어촌의 관광휴양자원 개발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아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의 전출금		
7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		
8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9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 「국가재정법」 제13조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⁵⁾

이와 같은 대규모의 지특회계 전출이 ‘농어업의 경쟁력강화, 농어촌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이라는 농어촌특별세의 징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농특회계는 그간 농어촌특별세 과소 수납에 따라 세출사업에서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2024년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도 농특회계의 세입재원 없는 세출사업 이월을 지양하고 타 회계 등에 적정한 수준을 전출하여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던 점 역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⁶⁾

5)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한다.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 국민연금기금
3. 공무원연금기금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 군인연금기금
6. 고용보험기금
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 임금채권보장기금
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 그 밖에 차입금이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전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 2025, p. 61.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회계·기금 간 거래과정에서 복잡한 거래 구조와 총계 기준 세출의 과다계상을 유발하는 중복거래를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농어촌특별세의 세입 증액분 대부분이 지특회계의 지역지원계정으로 전출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목적인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 등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 보조금 지원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농가에 대한 유가연동 보조금의 직접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농가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 기준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사업 개요

□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⁷⁾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농업용 면세유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으로 면세유와 기준가액 간 차액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신규로 78억 2,400만원을 반영하였음.

【 2026년도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예산	2026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	-	7,824	7,824	순증

7)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1041-302)

(2) 검토의견

□ '26년 2월말 이후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확대되면서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71.2달러('26.2.27.)에서 166.8달러('26.3.19.)까지 급등하는 등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 국제유가 동향 】

(단위 : \$/배럴)

구 분	발생 전	발생 후								
	2.27.	32주간	39주간	3.12.	3.13	3.16	3.17	3.18	3.19	3.20
두바이유 (전일 대비, %)	71.2	89.0	127.9	134.4 (12.4)	145.5 (8.3)	153.2 (5.3)	157.7 (2.9)	155.6 (△1.3)	166.8 (7.2)	158.9 (△4.8)
WII유 (전일 대비, %)	67.0	78.5	92.0	95.7 (9.7)	98.7 (3.1)	93.5 (△5.3)	96.2 (2.9)	96.3 (0.1)	96.1 (△0.2)	98.3 (2.3)
브렌트유 (전일 대비, %)	72.5	83.7	96.5	100.5 (9.2)	103.1 (2.7)	100.2 (△2.8)	103.4 (3.2)	107.4 (3.8)	108.7 (1.2)	112.2 (3.3)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농협의 면세유 가격 역시 전쟁 이전 대비 최대 리터당 경유 267원(26.6%), 등유 206원(19.0%), 휘발유 166원(19.6%)까지 상승한 상황임.⁸⁾

【 농협 면세유 가격 】

(단위 : 원/ℓ)

구 분	발생 전	발생 후										
	2.27.	32주간	39주간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경유 (전일 대비, %)	1,004	1,082	1,249	1,267 (0.7)	1,271 (0.3)	1,252 (△1.5)	1,239 (△1.0)	1,232 (△0.6)	1,225 (△0.6)	1,216 (0.7)	1,211 (0.4)	1,209 (△0.2)
등유 (전일 대비, %)	1,087	1,124	1,272	1,292 (0.6)	1,293 (0.1)	1,289 (△0.3)	1,285 (△0.3)	1,280 (△0.4)	1,269 (△0.9)	1,266 (△0.2)	1,253 (△1.0)	1,265 (1.0)
휘발유 (전일 대비, %)	846	893	996	1,009 (0.7)	1,012 (0.3)	999 (△1.3)	987 (△1.2)	983 (△0.4)	976 (△0.7)	968 (△0.8)	964 (△0.4)	961 (△0.3)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오피넷 자료

8)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26.3.13. 이후 하락세를 보임.

□ 이와 같은 면세유 가격의 상승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의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주요 시설원예 작물의 경우 수도광열비가 생산비의 약 14%,⁹⁾ 경영비의 약 20%를 차지하는 가운데, 시설 가온 방식도 등유(56.9%)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등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 실정임.

【 시설 가온방식별 농가(2024년) 】

(단위 : 천 가구, %)

합 계	시설 가온 농가								
	경유	등유	중유	가스	전기	지열	공기열	석탄	기타
38.7 (100.0%)	3.1 (8.1)	22.0 (56.9)	0.7 (1.8)	0.6 (1.6)	13.7 (35.4)	1.4 (3.5)	2.0 (5.2)	0.2 (0.5)	1.0 (2.7)

※ 주: 중복 응답 가구가 있어 표 내의 합계는 일치하지 않음

※ 자료: 2024년 농림어업조사 보고서

또한, 이와 같은 농가의 경영비 상승은 향후 먹거리 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이에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난방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이 높은 시설원예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지원 대상은 시설원예농가가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면세 등유, 중유, 난방용LPG, 부생유¹⁰⁾이며,

9) 오이 11.3%, 호박 9.6%, 토마토 7.3%, 파프리카 18.8%, 고추 12.2%, 장미 23.2%(’24년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2026년 3분기까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난방 수요가 감소하는 하절기를 제외한 3월, 4월, 9월 구매량에 대하여 유종별 가격과 기준가격('22.5월 가격의 88.5%) 간 차액의 70%를 일정 상한(기준가격의 10.78%) 내에서 지급할 계획임.

【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 계획 】

구 분	내 용					
법적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지원기간	‘2026.3,4,9월 구매 유류					
유 종	등유, 중유, 난방용LPG, 부생1호, 부생2호					
지원대상	관련 규정에 따라 영농사실 신고를 하고, 면세유구매전용카드를 발급 받은 시설농가·법인					
지원기준	유종별 단가한도 내에서 [판매가격-기준가격] × 70%					
	• 기준가격: ‘22.5월 유종별 평균가격의 88.5%					
	구분	등유	중유	난방용 LPG	부생1호	부생2호
	기준가격	1,112	1,116	1,197	1,015	1,055
	• 단가한도: 기준가격의 10.78%					
	구분	등유	중유	난방용 LPG	부생1호	부생2호
단가한도	120원	120원	129원	109원	114원	
지원방법	지원기간 동안 구매한 면세유류에 대해 면세유구매전용카드 결제계좌로 환급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지원 물량은 2025년 3월, 4월, 9월의 월별 면세유 사용량을 기초로 산정되었음.

- 10) 정밀 화학공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나프타를 분해하면서 생긴 부생유를 가공하여 만들어 낸 것으로, 부생연료유 1호는 보일러와 등유, 실내 등유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부생연료유 2호는 B-C유의 대체품으로 이용가능함(네이버 국어사전).

【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변동 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 산출 근거 】

7,824백만원 $\approx$ 등유 6,663 + 중유 223 + 난방LPG 495 + 부생1호 179 + 부생2호 264

- ① 등유(6,663백만원) $\approx 55,568\text{kl} \times \text{단가한도 } 120\text{원}/\ell$
- ② 중유(223백만원) $\approx 1,855\text{kl} \times \text{단가한도 } 120\text{원}/\ell$
- ③ 난방용LPG(495백만원) $\approx 3,842\text{kl} \times \text{단가한도 } 129\text{원}/\ell$
- ④ 부생1호(179백만원) $\approx 1,636\text{kl} \times \text{단가한도 } 109\text{원}/\ell$
- ⑤ 부생2호(264백만원) $\approx 2,321\text{kl} \times \text{단가한도 } 114\text{원}/\ell$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면세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사업을 통해 면세유 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을 일부 지원한다면 시설원예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정부에서는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면세유는 당초 유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농업인은 이와 같은 정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반면, 보조금을 통한 직접 지원 사업은 표적 집단이 체감하는 가격 효과가 높아 농어가 등 취약부문 보호에 적합한 정책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

【 유가 상승 충격 대응 정책 수단별 효과 비교 】

수단	단기 체감가격	수급 왜곡 위험	재정비용	타기팅	종합 평가
최고가가격제	높음	높음	중~높음	낮음	초단기·예외적 사용
유류세 인하	중간	낮음	중간	낮음	전가율이 낮으면 효율성 제한
직접지원	높음 (표적집단)	낮음	중간	높음	취약부문 보호에 적합
비축유·도입선 다변화	간접적	낮음	중간	중간	공급 충격 장기화 시 핵심
투명성·경쟁정책	중간	낮음	낮음	중간	비대칭성 완화에 우선 적용

※ 자료: 산업연구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2026.3.23.

□ 다만, 보조금 지원의 기준가격이나 지원의 상한액 설정에 있어 그 기준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는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그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임.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계획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의 기준가격은 '22.5월 유종별 평균가격의 88.5%임.

그러나 최근 난방용 면세유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중유, 난방용 LPG의 경우 '26년 3월의 평균가격보다도 기준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기준가격을 이와 같이 설정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¹¹⁾

11) 농림축산식품부는 화물차 유가연동보조금, 어업용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사업 등도 이와 동일하게 '22.5월 가격을 기준으로 편성하였다는 설명임.

【 난방용 면세유 가격 추이 】

(단위: 원/L, 원/kg)

기간	등유	중유	난방용LPG	부생연료1호	부생연료2호
'21년	776	725	956	678	722
'22년	1,197	1,049	1,283	1,031	1,013
'23년	1,178	1,062	1,233	1,113	1,083
'24년	1,097	1,016	1,199	1,023	1,043
'25년	1,083	1,030	1,248	1,024	1,041
'26년1월	1,079	960	1,107	999	1,026
'26년2월	1,062	972	1,147	1,003	1,025
'26년3월(1~25일)	1,174	1,013	1,140	1,067	1,068
기준가격	1,112	1,116	1,197	1,015	1,055
최대지원가격	1,283	1,287	1,381	1,171	1,218

※ 주: 기간별 평균가격은 해당 기간의 총판매액÷판매량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 자료

참고로, '24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는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에 7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는데, 정부에서 면세유 지원 기준가격을 엄격하게 설정('22.5월 가격의 88.5%)함에 따라 면세유 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해 전액 불용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아울러 사업계획상 지원의 상한 비율과 관련하여서는, 시장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에는 농가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대비 보전 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가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지원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등: 생산업체 용자지원과 농업인 직접 가격보조 사업을 비교·검토 필요

- “농업인에 대한 비료 가격보조” 사업은 농업인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으로, 단기적인 가격 충격으로부터 국내 농업을 신속히 보호 가능한 측면 등에 대하여 “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원료구입 용자지원” 사업과 정책 효과를 비교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 사업 개요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¹²⁾ 사업은 무기질비료 원료가격급등에 따른 영농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업인에게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용자)”¹³⁾ 세부 내역사업은 비료생산업체에 원료구입자금 용자액에 대한 이자액(1%)을 이차보전하는 사업임(상세내용 [참고자료] 참조).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 사업 예산을 42억원 증액하고,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용자)” 세부 내역사업 예산을 21억 5,500만원 증액하였음.

【 2026년도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용자) 및 가격보조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예산	2026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	-	15,600	19,800	4,200	26.9
농업자금이차보전	681,878	729,661	731,816	2,155	0.3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용자)	8,002	6,724	8,889	2,155	32.0

12)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2260-377)

13)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업자금이차보전(1038-301)

(2) 검토의견

-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산출내역은 무기질비료 원재료 및 완제품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① 농업인에게 무기질비료 14만톤 분량에 대한 구매가격 상승분(톤당 10만원, 상승률 11.5%)을 추가 지원 하기 위하여 42억원을 증액하였고, ②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의 원료구입을 위한 신규용자 3,000억원에 대한 이차 보전비(이차율 1.0%) 21억 5,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함.

【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산출내역 】

구분	사업	'26년 예산	'26년 추경안 증액분 산출내역
농업인 지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 15,600백만원 ○ 650,000톤 × 80,000원/톤 × 국비 30% *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 자부담 20%	□ 4,200백만원 증 ○ 140,000톤 × 100,000원/톤 × 국비 30%
비료생산업체 지원	무기질비료 원료구입 (용자)	□ 6,724백만원 ○ 487,429백만원* × 이차율(0.97~1.00%) * 2,000억원 신규용자에 대한 추정평잔	□ 2,155백만원 증 ○ 3,000억원 신규용자 × 신규지원율(98.8%) × 평잔율(72.7%) × 이차율(1.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2026.4.)

- 무기질비료의 핵심 원자재(요소, 인산암모늄, 염화칼륨 등)는 대부분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원자재의 가격과 환율 변동이 국내 비료 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임.

이에 따라 중동분쟁 상황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은 비료 완제품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지며, 대체가 어려운 필수농자재인 비료 가격 인상은 농가의 영농비용 증가 및 소득 감소로 직결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농산물 출하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때, 식량안보 및 물가 안정 측면에서 적기에 재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추경예산안의 편성목적¹⁴⁾과 편성시기에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위기상황에 대응 수단으로서 “농업인에 대한 비료 가격 보조” 사업과 “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원료구입 용자지원” 사업 간 정책 효과를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음.

□ 먼저, “농업인에 대한 비료 가격보조”는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으로, 단기적인 가격 충격으로부터 국내 농업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수단임.

그런데, 무기질비료의 국내 판매가격은 비료 생산업체와 농협이 입찰 및 협상을 통하여 가격을 결정하므로,¹⁵⁾ 비료 판매가를 적정수준으로 설정하고 농업인에게 비료가격을 직접 지원한다면, 가격 상승을 통해 비료 생산업체의 원가 상승 부담도 일정 부분 흡수될 수 있음.¹⁶⁾

14) 추경안의 편성목적(「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15) 무기질비료는 국내 시장 유통물량 90%이상이 농협을 통하여 공급됨(한국비료협회)

16) 다만, 이에 대해서는 비료·사료 등 투입제에 대한 가격보조는 WTO 「농업에 관한 협정」 상 감축대상보조(AMS)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연간 1조 4,900억원의 한도 내에서만 운용이 가능한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감축대상 보조금(AMS): WTO 농업협정상의 국내보조 중 한 분류로 무역 및 생산왜곡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행 기간 내에 일정 목표수준으로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 보조금

□ 다음으로, “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원료구입 용자지원”은 기업의 원자재 구매를 위한 자금조달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비료 생산업체를 단기 경영위기로부터 보호하고, 산업안정화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국내 비료 수급에도 기여할 수 있는 수단임.

다만, 동 사업은 2025년 기준, 국내 무기질비료 생산량 175만 톤 중 약 93만 톤이 내수에, 77만 톤이 수출에 사용¹⁷⁾되어, 생산업체에 대한 용자지원이 내수용뿐 아니라 수출용 비료를 포함하여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투입 효과가 국외로 유출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동 용자지원 사업은 2026년에 국내 기업 7곳에 지원되었는데, 지원대상이 대기업 2곳, 중견기업 3곳, 중소기업 2곳으로 상대적으로 단기 위기로부터 취약한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정책효과 비교 】

사업	농업인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무기질비료 생산업체 용자지원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용자))
수혜대상	농업인 *비료생산업체도 상호보완적 수혜	비료 생산업체 *농업인도 상호보완적 수혜
수혜대상의 위기취약성	높음(영세 비중 ↑) *판매금액 5천만원 미만 농가비율 89.5%	혼합적 *’26년 대기업 2곳, 중견 3곳, 중소 2곳 지원
지원방식	직접 보조	이차보전(간접) *용자에 대한 이자 지원
재정 집중도	내수	내수 + 수출 혼재
효과시점	즉각적	직접보조에 비하여 상대적 지연

17)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26. 3.)

-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경예산안의 “농업인에 대한 비료 가격보조(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예산이 1개 분기분에 불과하며, 에너지 공급 충격으로 인한 가격 급등이 전쟁 종료 후에도 재고 부족·물류 지연 등으로 단기 정상화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추가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임.¹⁸⁾

18)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 생산업체 용자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2026년 예산이 대폭 감소(25년 신규용자 5,000억원 → 26년 신규용자 2,000억원)되어 생산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비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예산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 1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개요 (농식품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비종별 가격 인상분 80% 지원('22~'23), 전분기 가격 차액분 80% 지원('24~'26)
 - * 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

□ 연도별 사업 예산 및 산출내역

- '22년(1,801억원), '23년(1,000), '24년(288), '25년(255), '26년(156)

* 실적: ('22) 85만톤 1,240억원 ('23) 84만톤 739억원 ('24) 65만톤 224억원 ('25) 67만톤 182억원

- ('22년 예산) 180,099백 만 원: $1,034,363\text{톤}^* \times 580,387\text{원}^{**}/\text{톤} \times 30\%$ (국비)
 - * '22년 연간 판매 예상량 1,034,363톤(최근 3개년 평균 판매량의 95%)
 - ** '22년 평균 판매가격 (1,195,279원/톤) - '21년 8월 평균 판매가격 (614,892원/톤) = 580,387원/톤
- ('23년 예산) 100,000백 만 원: $638,222\text{톤}^* \times 522,284\text{원}^{**}/\text{톤} \times 30\%$ (국비)
 - * '23년 연간 판매 예상량 1,034,363톤(최근 3개년 평균 판매량의 95%)의 61.7%
 - ** '23년 평균 예상 판매가격 (1,137,176원/톤) - '21년 8월 평균 판매가격 (614,892원/톤) = 522,284원/톤
- ('24년 예산) 28,815백 만 원: $425,000\text{톤}^* \times 226,200\text{원}^{**}/\text{톤} \times 30\%$ (국비)
 - * '22년 지원물량(실적) 85만톤의 50%
 - ** '24년 판매 예상가격 (877,642원/톤) - '23년 4분기 농가할인 구매가 (651,442원/톤) = 226,200원/톤
- ('25년 예산) 25,500백 만 원: $850,000\text{톤}^* \times 100,000\text{원}^{**}/\text{톤} \times 30\%$ (국비)
 - * '25년 지원 예산 물량
 - ** '24년 비료 판매가격 (779,000원/톤) - '24년 농가할인 구매가 (679,000원/톤) = 100,000원/톤
- ('26년 예산) 15,600백 만 원: $650,000\text{톤}^* \times 80,000\text{원}^{**}/\text{톤} \times 30\%$ (국비)
 - * '24년 보조금 집행 물량
 - ** '25년 비료 판매가격 (825,000원/톤) - '25년 농가할인 구매가 (745,000원/톤) = 80,000원/톤

- 무기질비료는 대부분 농협계통공급(24년: 97%) 중으로 농협에서 업체간 계약 시 원자재 가격, 제경비 등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비료 가격 결정

* 농협은 외부원가조사를 바탕으로 업체와 입찰·협상을 통해 구매가격 결정 후 농협 수수료(7.5%) 가산하여 판매가격 결정(매분기 국제원자재가격과 환율 반영 조정 가능, 단, $\pm 5\%$ 이하 변동시 기존 가격 유지)

[연도별 비료 기준가격 및 농가 구매가(단위: 천원)]

구분 (천원/톤,%)	'21.8월	'22.12Q	'22.34Q	'23.1Q	'23.2-4Q	'24.1Q	'24.2~4Q	'25.1~4Q	'26.1Q
비료가격 (전분기比 증감율)	586 (9.7%)	1,114 (90.1%)	1,099 (△1.4%)	973 (△11.5%)	878 (△9.8%)	813 (△7.4%)	779 (△4.3%)	825 (5.9%)	871 (5.6%)
농가구매가격 (전분기比 증감율)	586 (9.7%)	706 (20.5%)	703 (△0.4%)	673 (△4.3%)	651 (△3.3%)	686 (5.2%)	679 (△1.0%)	745 (9.7%)	807 (8.3%)

참고 2

농업종합자금_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개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자금 지원(이차보전)

- **(사업목적)**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에 원료구입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비료업체 경영여건 개선, 비료 수급 및 가격안정, 수출 활성화 도모
- **(지원현황)** 최근 5년 비료 생산업체 대상 평균 4,000억원 규모 융자지원
* ('21년) 2천억원 / 3% → ('22) 6 / 0% → ('23) 6 / 3% → ('24) 4 / 3% → ('25) 5 / 3%

(단위:억원)

구 분	연도별 지원규모 및 실적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지원규모	2,000	2,000	2,000	2,000	2,000	6,000	6,000	4,000	5,000
대출실적	1,441	1,661	1,341	1,411	1,598	5,935	5,966	3,913	4,970

* 비료생산업체 연간 원료구입 소요금액은 약 1조원 수준('22년 1.5조, '23, 1.2조, '24. 1조)

- **(사업대상자)** 무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수출한 실적이 있거나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3년 이상 공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지원자격)** 무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수출한 실적이 있거나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3년 이상 공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사업규모)** '26년 예산 2,000억원
- **(지원조건)**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변동금리, 융자 기간 1년
* (이차보전사업) 시장금리와 정책금리의 이차 차액 보전
- **(지원절차)** 한국비료협회에 신청 → 한국비료협회 심의위원회 심의 → 농식품부 승인 → 대상업체, 농협 통보 → 대출 실행

3)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수출기업 지원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보완 필요 등

-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사업은 지원받은 기업이 당해에 수출실적이 전혀 없더라도 지원금을 전액지원 가능하고, 이에 대한 제재가 없으므로, 수출기업을 지원하려는 사업취지에 맞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임.
- 또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산출내역은 피해현황 고려 또는 피해기업에 지원방안이 불명확하여, 국회에서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1) 사업 개요

□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¹⁹⁾의 내역사업인 농식품우수기업육성 사업은 농식품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보험, 해외인증 및 컨설팅, 상품 개발 등 필요 사업을 수출업체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중동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K-푸드 수출 기업의 물류운임·보험료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72억원을 증액하였음.

【 2026년도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예산	2026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92,729	115,751	122,951	7,200	6.2
생산기반조성	7,126	4,026	-	-	-
판매조직육성	26,880	27,330	-	-	-
농식품우수기업육성	56,223	79,795	86,995	7,200	9.0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1,500	1,200	-	-	-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시설)	-	1,500	-	-	-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기자재)	-	1,400	-	-	-

19)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2835-406)

(2)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농식품우수기업육성의 세부 내역사업인 “농식품글로벌 성장패키지”는 농식품 수출역량 및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농식품의 수출을 촉진하려는 사업임.

【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개요 】

구분	세부내역		
목적	○ 농식품 수출역량 및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춘 다양한 지원으로 우리 농식품 수출 촉진 도모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23~'25년 중 1년 이상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필수		
지원내용	○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사업메뉴 22개 중 자율선택		
	생산·수출 기반 (7종)	수출컨설팅	제품개발
		수출전문인력 양성	수출보험
		해외인증 등록	통번역
		법무·세무·회계 자문	
	수확후 관리(4종)	선도유지제	포장디자인 개발
		수출 공동브랜드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
	운송 및 통관 (4종)	샘플통관운송	물류효율화
		항만·공항 부대비용	현지 수입등록 및 검사
	관로 개척 (7종)	글로벌홍보	현지시장 개척
		개별식품박람회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
		관측 및 신규 입점	수출상담회
지사화			
예산 및 지원한도	○ 2026년 예산: 720억 400만원 *최근 3개년 수출기준을 토대로 업체별 지원한도 부여		
국고 지원비율	○ 중소기업: 국고 90%, 자부담 10% ○ 중견기업: 국고 80%, 자부담 20%		
수행주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자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사업설명자료(Ⅱ-1)」(농림축산식품부, 2026. 3.), 「2026년도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2026. 1.)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에 선정된 지원대상 720개 업체에 대한 지원단가를 추가적으로 960만원 증액하기 위하여 총 7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음.

【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구분	산출내역
'26년 본예산	○ 720개 업체 × 126백만원 × 80%(자부담률) = 720억 400만원
'26년 추경안	○ 720개 업체 × 138백만원 × 80%(자부담률) = 792억 400만원 * 업체당 지원단가 960만원 증(12백만원 × 자부담률 80%)

※ 자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사업설명자료(II-1)

- 식품기업은 ① 유통기한 특성상 임항지연 등 물류 차질에 직접적 피해를 받고, ② 물류비 비중(매출액 대비 10.9%²⁰⁾)이 전 업종 중 최고 수준이며, ③ 특히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물류비 비중이 높아 소규모 식품기업의 사업운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음.²¹⁾

이를 고려하면 현재의 중동사태로 인한 경제상황으로부터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적기 재정 대응이 필요한 만큼, 추경예산안의 편성목적²²⁾과 편성시기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20) 「2022년 기업물류비 실태조사」(KOSIS 국가통계포털)

21) 전체업종 매출액 규모별 물류비 비중(2022년 기준)

매출액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
500억 미만	7.80%
500억 이상 ~ 1,000억 미만	5.93%
1,000억 이상 ~ 3,000억 미만	5.00%
3,000억 이상	4.39%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22) 추경안의 편성목적(「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실제 기업의 수출사업에 지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동 사업은 기업이 22종의 사업메뉴를 배정금액 내에서 메뉴별 금액 한도없이 자유롭게 집행한 후 매월 정산받는 구조임. 그런데, 사업메뉴 중에는 “제품개발”, “디자인개발”, “전문인력 양성(임직원 교육)” 등 내수에도 그대로 활용 가능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

【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메뉴(22종) 】

사업 메뉴		정산 내용
생산·수출 기반(7종)	수출컨설팅	수출결과 정산 없음
	수출전문인력 양성	"
	해외인증 등록	"
	법무·세무·회계 자문	"
	제품개발	"
	수출보험	수출계약서 제출
	통번역	수출결과 정산 없음
수확후 관리(4종)	선도유지제	수출신고필증 제출
	포장디자인 개발	수출결과 정산 없음
	수출 공동브랜드	수출신고필증 제출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	"
운송 및 통관 (4종)	샘플통관운송	"
	항만·공항 부대비용	"
	물류효율화	"
	현지 수입등록 및 검사	수출결과 정산 없음
판로 개척 (7종)	글로벌홍보	"
	개별식품박람회 참가	"
	관측 및 신규 입점	수출의무액 부여
	지사화	수출결과 정산 없음
	현지시장 개척	"
	해외바이어 초청	"
	수출상담회	"

*자료: 「2026년도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2026. 1.) 및 「2025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정산기준」(2025. 8.) 각색

또한, 22개 메뉴 중 8개 메뉴에 대해서만 수출결과 증빙을 요구하여 해당 메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수출실적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지원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는 상황임.

특히, 동 사업은 기존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도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²³⁾, 지원받은 해에 수출실적이 전혀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음연도에만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뿐, 당해연도의 사업지원액을 축소하거나 환수하는 등의 제재가 없음.²⁴⁾

결과적으로, 지원대상 기업이 수출을 포기하거나 이를 악용하여 내수판매에만 집중하더라도 지원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없는 상황임. 이는 사업 예산이 수출 지원에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원이 절실한 다른 수출기업에 대한 사업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동 사업은 그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별 배정액의 일정 비율은 수출실적이 발생한 경우에만 지원하거나, 수출 미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최종 정산 후 지원액 반환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3) 현재, 2026년 사업지원 대상자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원신청한 1,437개사 중 200여개 기업이 수출실적이 없음.

24) 다만,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지원대상 기업은 수출컨설팅, 해외인증 등록 및 수출보험 중 1개 이상의 메뉴에 배정액의 50%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여 일부 방지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둘째, 추가경정예산안의 산출근거와 집행계획을 구체화하여 국회에서 실질적인 예산심사가 가능하도록 보완이 필요함.

추가경정예산안의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2026년 지원대상 전체 720개 기업 전체에 일률적으로 96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임.

그러나, 가장 피해가 직접적인 중동(걸프협력이사회)²⁵⁾ 지역의 K-푸드 수출비중은 4.2%(2025년 기준)에 불과한 반면, 중화권(24.3%)·일본(13.4%) 등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러한 지역별 피해 차이가 추경 편성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²⁶⁾

【 2025년 권역별 농식품 수출실적 】

(단위: 억달러)

권역	수출액(억달러)	비중(%)
중화권	23.8	24.3
북미	20.2	20.6
아세안	18.7	19.1
일본	13.1	13.4
유럽	7.7	7.9
CIS(몽골 포함)	4.8	4.9
GCC(중동)	4.1	4.2
오세아니아	3.1	3.2
중남미	2.4	2.4
계	94.8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6. 1.

25) 사우디아라비아·UAE·카타르·쿠웨이트·오만·바레인 6개국으로 구성된 중동 걸프 지역의 경제·안보 협력체

26) 이는 추경안 제출 기준, 2026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지 않은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이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점에 동 사업의 2026년 사업대상자가 선정 및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구체적인 피해상황이나 지원방식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이처럼 추경예산안의 산출근거와 지원방식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검토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편성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집행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봄.

4)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방비 확보 등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26년 신규편성된 사업으로서, 정책검증이 필요한 시범사업임을 고려할 때 추경을 통한 사업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로 선정되는 사업지역에 대하여 지방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촉박한 사업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면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함.

(1) 사업 개요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국토 관리와 지역사회 유지 등 공익기여 행위에 대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706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음.²⁷⁾

【 2026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예산	2026년			
		본예산(A)	제1회 추경안(B)	증감(B-A)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234,075	304,705	70,630	30.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7) 회계(기금)-세부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4135-300)

□ 동 사업은 2025년 9월 정부에서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 농어촌 인구 감소지역 군 69개²⁸⁾ 중 지역 여건 및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하여 7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2026년 예산안에 국비 1,709억원을 편성한 바 있음. 이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3개 군(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이 추가되어 총 10개 군을 대상으로 2026년 2,341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상황임.

□ 한편,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2026. 3. 11.)한 바 있음.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은 30일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해당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삶의 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매월 지급하도록 하면서,

28)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출생률, 고령·유소년·생산가능인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며, 2021년 10월 최초로 89개 시·군·구가 지정됨. 이 중 농어촌 지역에 속하는 군 단위는 69개임.

국가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소요되는 금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부담분을 제외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검토의견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군 단위)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개인당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년간(2026년~2027년) 시범사업을 거친 후 본 사업 전환을 검토할 예정임.
- 동 사업은 2026년 예산으로 32.5만명에게 12개월 동안 6만원(15만원 × 40%)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2,337억 3,800만원과 운영비 3억 3,700만원으로 총 2,340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19.6만명(2026년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한 군 49개 중 미선정된 39개 군의 2026년 예상 인구 평균 39,239명 × 5군)에게 6개월 동안 6만원(15만원 × 40%)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706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변경된 총 사업비는 3,047억 500만원임.

【 2026년 예산 및 추경예산안 】

3,047억 500만원

○사업비: 2,337억 3,800만원(예산) + 706억 3,000만원(추경예산안)

= (예산) 32.5만명 × 15만원 × 12개월 × 40%(국비지원율)
+ (추경) 19.6만명 × 15만원 × 6개월 × 40%(국비지원율)

○운영비: (예산) 3억 3,700만원

□ 기본소득의 지급을 통한 농어촌 주민의 가처분소득 증대는 농어촌 정주에 대한 유인을 강화시키고,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활용한 기본소득의 지급을 통하여 지역 내 경제활동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확대는 이러한 효과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추경예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정책검증이 필요한 2026년 신규 시범사업임을 고려할 때, 추경예산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관련 법률안의 향후 공포 시 사업 시행이 확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법률의 시행일이 2028년 1월 1일인 점을 고려하면, 시행 전까지 사업효과나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시범사업으로서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기본소득의 지급은 2026년 2월 말에 처음 지급되어 2026년 4월 현재 두 번밖에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정책적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상당히 짧은 기간으로 판단되며, 최소한 1년의 시범사업을 통해 정주 유도 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제도 시행방안을 보완하고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임.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하여 사업확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기존의 시범사업 지역과 다른 지역별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서 차별화된 사업검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면 사업확대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격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목적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금번 추경예산안은 최근 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에 대응하여 물류비 및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는 한편,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동 사업은 물류·유통비 부담 경감의 추경예산의 목적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농어민의 민생 안정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원 대상이 일부 농어촌 지역 주민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정책효과를 갖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다만, 이에 대하여는 비록 일부 지역에 한정되지만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가처분소득 확대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한 것으로 보임.

한편, 추경예산은 「헌법」 제56조²⁹⁾ 및 「국가재정법」 제89조³⁰⁾에 따라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기존 예산으로는 대응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편성되는 예외적 재정수단으로서, 그 성격상 긴급하고 일시적인 재정 수요에 대한 보충에 한정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기적 재정지출을 전제로 하는 사업으로서 사전적 계획 수립이 가능한 중장기 정책에 해당하며, 특정 기간에 한정된 일시적 재정 수요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29) 「대한민국 헌법」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30)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 셋째,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군 69개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15.6%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경예산에 따라 추가로 선정되는 지역의 지방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구 중 도시 5개 구와 15개 시(도농복합시 14개, 일반시 1개)를 제외한 농어촌지역 69개 군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재원 분담 비율이 국비 40%, 지방비 60% (도비 30%, 군비 30%)로 설정된 상황으로 추가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지역의 경우 추가적인 지방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되는 국비가 706억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지자체에서 필요로 되는 지방비는 약 1,059억원 수준으로 추가로 선정되는 5개의 지자체는 도비와 군비를 합쳐 평균적으로 2026년에는 약 212억원, 2027년부터는 약 424억원의 재정이 추가적으로 확보·부담하여야 함.

그러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인 10개 군의 경우에도 2026년 3월 기준 지방비가 도비와 군비 모두 확보된 지역은 1곳(경기 연천)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지역에서 1차 또는 2차 추경을 통하여 확보하겠다는 입장임.

【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비(도비·군비) 확보 현황】

(단위: 백만원)

지역	도비(지원을 30%)			군비(지원을 30%)		
	기 확보액	미 확보액 (확보예정시기)	합계	기 확보액	미 확보액 (확보예정시기)	합계
경기 연천	24,044	0	24,044	24,044	0	24,044
강원 정선	7,045	10,568 (’26 1차 추경)	17,613	10,000	7,613 (’26 2차 추경)	17,613
충북 옥천	13,031	13,030 (’26 2차 추경)	26,061	26,061	0	26,061
충남 청양	5,250	10,950 (’26 1차 추경)	16,200	16,200	0	16,200
전북 순창	4,814	9,772 (’26 1차 추경)	14,586	13,537	1,049 (’26 1차 추경)	14,586
전북 장수	3,938	7,128 (’26 1차 추경)	11,066	11,066	0	11,066
전남 신안	19,709	1,792 (’26 2차 추경)	21,501	18,000	3,501 (’26 1차 추경)	21,501
전남 곡성	13,860	1,260 (’26 2차 추경)	15,120	12,420	2,700 (’26 2차 추경)	15,120
경북 영양	5,036	3,358 (’26 1차 추경)	8,394	8,394	0	8,394
경남 남해	12,636	8,085 (’26 하반기)	20,721	20,721	0	20,721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2026. 3.)

69개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5.6%에 불과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추가되는 사업 대상 지역의 안정적인 지방비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평균 재정자립도 】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도시 5개구 제외)	도농복합시 15개	농어촌 지역 69개군
15.8%	16.9%	15.6%

*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 = 도시 5개구 + 시 15개(도농복합시 14개, 일반시 1개) + 농어촌 지역 군 69개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넷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면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경예산안 집행을 위하여 5월 중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고, 6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7월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임.

그러나 2026년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대다수 선정 지역에서 2025년 12월부터 신청·접수가 진행되었고, 1월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실거주 등 자격확인 절차를 거쳐 2월 말에 최초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였으며, 2026년 1월부터 신청·접수가 진행된 곡성군의 경우 3월에 최초 지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경예산으로 추가 선정될 지역의 경우 기본소득 지급이 7월보다 지연될 우려가 있음.

또한, 2026년 3월 말 지급 시에는 전 지역에 대해 1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계획³¹⁾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1)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목소리 반영하고 지역 활력에 박차’, 2026.3.25.

소급 지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행정처리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는 3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문제는 지급대상자 확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 주요 집행 기반이 사전에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된 데에도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추경예산안으로 추가 선정되는 지역의 경우, 지방비 확보를 비롯한 사업 준비 기간이 더욱 촉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면밀한 사업 준비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농지이용관리지원 : 재정 운용의 계획성 제고, 면밀한 사업 관리 및 실질적인 정책 효과 제시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정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계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전수조사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단기간 내 추진되는 만큼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요구되며, 대규모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1) 사업 개요

□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³²⁾은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에 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농지대장 정비 및 농지이용실태조사에 필요한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조사원 채용 및 농지 조사를 위한 자산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 587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음.

【 2026년도 농지이용관리지원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계획액	2026년			
		계획액(A)	변경안(B)	증감(B-A)	%
농지이용관리지원	13,540	13,944	72,715	58,771	421.5

32)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지관리기금-농지이용관리지원(4130-412)

(2) 검토의견

- 대한민국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농지 소유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으나, 동시에 「농지법」상 예외조항에 따라 사실상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일각에서는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임대차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농지 임대차도 발생하고 있는 등 농지를 둘러싼 현실과 경자유전 원칙에 바탕을 둔 농지 제도간 괴리가 존재함.

나아가 이러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와 불법 임대차는 농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농지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청년농·귀농인 등의 농지 확보를 어렵게 하여 영농비 상승의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처분을 통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자 「농지법」 제정('96년) 이후 소유권이 변동된 약 977만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 예산을 당초 계획액인 139억 4,400만원 대비 587억 7,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당초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에는 '96년 이전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농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농지대장 현행화 조사에 56억

9,400만원, 농지의 소유·이용 등 실태조사를 위해 76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농지 소유·이용 등 실태조사 사업비를 특별조사를 위해 확대 편성한 것임.

【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 산출 근거 】

‘26년 당초 기금운용계획	‘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13,944백만원 가. 조사원 채용 (13,344백만원) · 이용실태조사 : 190만 필지 X 0.5시간/필지 X 10,320원 X 1.1147(보험료) X 70% = 7,650백만원 · 농지대장현행화조사 : 300만필지 X 0.33시간/필지 X 10,320원 X 1.1147(보험료) X 50% = 5,694백만원 나. 운영비 지원(600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59,842백만원 가. 조사원 채용 등 (58,037백만원) · <u>특별조사 : 930만 필지 X 0.55시간/필지 X 12,235원 X 1.1147(보험료) X 70% = 47,898백만원</u> · 농지대장현행화조사 : 300만필지 X 0.33시간/필지 X 10,320원 X 1.1147(보험료) X 50% = 5,694백만원 · 출장여비, 피복비, 태블릿 등 4,445백만원 나. <u>운영비 지원(1,805백만원)</u> ○ 민간경상보조(320-01) : 6,547백만원 가. 드론 구매, 용역 및 영상 저장·편집 장비 등 (6,255백만원) 나. 농지 조사 지원을 위한 시스템 기능 개발 및 라이선스 구입 등 (192백만원) 다. 농지 조사를 위한 교육·홍보비 (100백만원) <농관원 조사> ○ 일용임금(210-01) : 5,018백만원 · 392명 X 256만원 X 5개월 X 100% = 5,018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575백만원 · 일용임금 X 11.47% X 100% = 575백만원 ○ 피복비(210-03) : 59백만원 · 392명 X 15만원 X 100% = 59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333백만원 · 392명 X 10,625원 X 16일 X 5개월 X 100% = 333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341백만원 · 392명 X 66천원 X 5개월 X 100% = 129백만원 · 우편 송달료 등 212백만원

농림축산식품부는 3개월간 기본조사를 통해 행정정보·위성사진·AI 분석 후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하고, 선별된 농지에 대해서는 5개월간 심층조사를 통해 농지의 소유관계, 실경작 여부, 시설 설치·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임.

【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 개요 】

구 분	내 용
법적근거	「농지법」 제31조의3(실태조사),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목 적	투기 근절 및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위해 특별조사 추진
조사 대상	「농지법」 제정('96) 이후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농지 *조사내용 : ①소유관계, ②실경작 여부, ③시설 설치·전용 여부, ④휴경 여부 등
조사 방식	(기본조사) 대상 농지를 행정정보·위성 사진·AI 분석 후 종합 DB 구축 및 심층 조사 대상 선별(5~7월, 3개월) (심층조사) 선별된 농지에 대해서는 전담 인력을 현장 투입하여, 실제 농업경영 여부 및 위반행위(무단 휴경, 불법전용 등) 점검(8~12월, 5개월) *10대 심층 조사군 :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② 수도권 쏠지역 ③ 경매 취득자 ④ 농업법인 ⑤ 외국인 소유 농지, ⑥~⑧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상속·국가·지방정부 제외), 관외거주자, 공유취득자, ⑨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 ⑩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농지
결과	적발 농지는 유형을 구분해 행정처분(처분의무·명령·원상회복), 계도 등 조치, 현장 조사 결과는 농지대장에 직권 반영(12월)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 이러한 농지조사의 강화는 경자유전 원칙에 부합하는 농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점검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다만, 동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예측 가능하였던 측면이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요건에 비추어 볼 때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재정 운용의 계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르면 정부는 ①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경기침체, 대량실업 등과 같이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③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³³⁾

그러나 농지의 불법임대차, 투기 문제 등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로, 당해 사업의 사업 수요 증가가 예산 편성 후의 갑작스러운 정책 결정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추경 편성의 전제가 되는 긴급한 소요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정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계획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33) 동 조항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것으로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재정 통제 측면에서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이 공익·가치창출형 일자리 확충(5,000명) 목적에 포함된다는 입장임.³⁴⁾

- 둘째, 위와 같이 동 사업이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반영됨에 따라 특별조사가 단기간 내 실시될 것으로 예정되는 만큼 면밀한 사업 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별조사는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심층조사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기초조사가 부실하게 실시되는 경우에는 전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심층조사가 단기간 내 이루어질 경우 조사 대상자의 형식적 응답 가능성을 높여 실경작 여부 등에 대한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농지조사를 지원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수립하는 한편, 조사원에 대해 철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끝으로, 이번 조사는 대규모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사업으로 인한 정책 효과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4) 기획예산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6.3.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농지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어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며, 법 위반이 지능화·음성화되는 만큼 일제 특별조사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한 행정처분 실적 등 일차적 성과뿐 아니라 조사 전후 투기성 거래 감소를 등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기존 실태조사 대비 추가적인 정책 효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6)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 사료비 안정을 위한 중장기적 방안 마련 필요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은 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영개선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향후 사료비 안정을 위해 국산 사료 원료 자급률을 확대할 수 있는 중장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사업 개요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³⁵⁾은 축산농가에게 현금거래 등으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축산농가의 사료구매 정책자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650억원을 증액하였음.

【 2026년도 사료구매자금지원 사업 기금계획변경안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계획액	2026년			
		계획액(A)	변경안(B)	증감(B-A)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300,000	250,000	315,000	65,000	26

35) 회계(기금)-세부사업: 축산발전기금-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3733-329)

(2) 검토의견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은 축산농가·법인 등에게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 선납입금 상환 자금을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및 축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서,

동 사업의 지원대상인 사료비는 축산농가 생산비의 평균 54.7%를 차지하고 있어 사료 수급 및 가격안정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음.

【축산물 생산비 중 사료비 비중】

(단위: %)

구 분	'22	'23	증감	구 분	'22	'23	증감
송아지(한우) (마리당)	50.9	49.0	△1.9	비육돈 (생체100kg당)	58.6	56.3	△2.3
비육우(한우) (생체100kg당)	39.7	42.9	3.2	계란 (100개당)	61.5	63.5	2.0
육우 (생체100kg당)	57.3	57.9	0.6	육계 (10kg당)	57.6	55.9	1.7
우유 (100ℓ당)	57.9	57.5	△0.4	평 균	54.8	54.7	△0.1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주사료인 배합사료 제조원가 중 원료비 비중은 87.5%('22년, 한국은행)에 달하는 등 원가 구조상 원료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사료용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대외 여건 변화에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제 곡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환율 불안정성 증가, 물류비 인상 등으로 불안정한 사료 원료 수급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사료비 부담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 배합사료 기준 주요 연도별 곡물시황, 환율 등 비교표 】

구분		‘22.12	‘23.12	‘24.12	25(A)	‘26.1	‘26.2	26(B)	B-A
배합사료 가격 (kg/원)		695	643	623	610	612	615	618	+8
옥수수 (US\$/MT)	PNW	361	258	238	247	250	246	263	+16
	GULF	375	270	254	261	269	273	297	+36
대두박(US\$/MT)		634	557	382	402	397	426	468	+66
사료용소맥(US\$/MT)		346	300	259	253	254	253	257	+4
해상운임 (US\$/MT)	PNW	24	26	16	20	24	28	37	+17
	GULF	56	62	43	48	54	55	74	+26
환율(원/US\$)		1,288	1,293	1,448	1,447	1,435	1,433	1,491	+44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2026. 3.)

□ 동 사업을 통한 용자는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등의 가축 축종의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해 지원됨.

축종별 “농가당 지원한도”와 “마리당 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사업 신청 시 이전 사료구매자금의 지원 금액(대출잔액 기준)이 있는 경우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차감한 금액 내에서 중복 지원이 가능함.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2월 현재 자금 배정을 위한 지방정부 수요조사를 실시 중이며, 3월에 기존 계획된 예산을 배정하고, 4월에 추경에 따른 추가 자금을 배정할 계획임. 또한, 사료가격 상승과 상·하반기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축산농가의 수요가 충분하고, 축산농가의 사료구매 비용 부담완화를 통한 경영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다만, 사료용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대외 여건 변화에 취약한 구조라는 점에서 향후, 수입사료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국산 사료 원료 자급률을 확대할 수 있는 중장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농식품소비기반조성 : 농축산물 할인지원 내역사업의 연례적 증액 변경 지양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내역사업의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증액변경을 연례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1) 사업 개요

□ 농식품소비기반조성 사업³⁶⁾은 식생활교육, 농축산물 할인,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및 직매장 설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식품의 소비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비자의 농축산물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할인지원 예산 500억원을 증액하였음.

【 2026년도 농식품소비기반조성 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예산 ³⁷⁾³⁸⁾	2026년			
		계획액(A)	변경안(B)	증감(B-A)	%
농식품소비기반조성	243,424	122,716	172,716	50,000	40.7
농축산물 할인지원	228,000	108,000	158,000	50,000	46.3

36)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식품소비기반조성(3041-300)

37) 동 사업은 직전 연도인 2025년까지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사업이었음

38) 2025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세부사업 123,424백만원, 내역사업 108,000백만원이나, 제1회 추경 시 동 내역사업 예산이 120,000백만원 증액되어 세부사업 243,424백만원, 내역사업 228,000백만원이 됨

□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 증액편성된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소비자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가격 할인을 보조하는 사업임.

세부적으로는 ① 소비자에게 높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품목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 1주일에 1인 1만원 한도에서 20% 할인(전통시장은 1인 2만원 한도에서 30% 할인)을 지원하는 한편,

② 설·추석 등 특정 성수기에 가맹점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³⁹⁾을 구매할 수 있는 선불형 모바일 상품권인 “대한민국 농할상품권”⁴⁰⁾을 발행하여 1인 3만원 한도에서 30% 할인을 지원하고 있음.

【 농축산물 할인지원 내역사업 개요 】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농식품부가 지정한 품목에 대해 정부지원(20% 또는 정액)하고, 자체 할인을 포함하여 소비자 구매액 할인
사업 대상	○ (업체) 사업 신청 및 평가를 거쳐 선정된 대형·중소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 유통업체 ○ (품목)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및 대체소비 품목, 명절 등 주요 시기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 등 《대상 품목 선정 기준》 ① 농축산물 중 도매가격 또는 소비자가격이 평년 또는 전년, 전주 대비 20% 이상 (축산물은 10% 이상) 상승한 품목 * 다만, 할인지원 시 가수요 초래 또는 물량 부족 등이 우려되는 품목은 제외 가능 ② ①번 품목의 소비 분산 유도를 위한 대체 품목

39) 참고로, 농할상품권은 가맹점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라면 별도 품목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음

40)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 상품권’의 의미를 가진 약어 “농할상품권”을 상품권의 정식명칭으로 사용 중에 있음

구 분	내 용																																	
	③ 명절 등 농축산물 집중 소비 시기 주요 소비 품목 ④ 그 밖에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할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식품부가 인정하는 품목																																	
사업 종류	○ (상시할인) 농축산물의 상시 할인 판매가 가능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추진 (전통시장·농할상품권 제외) ○ (농축산물 성수기) 명절, 김장철 등 농축산물 구매성수기에는 모든 유통경로에서 할 인 지원 사업 추진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가급적 부처 합동 행사로 추진하여 소비자 편익 증진																																	
사업 예산	○ (예산) 1,080억원 (사업비 1,060억원, 운영비* 20억원) - 유통경로별 사업비 배정: ① 대형유통경로 477억원(45%), ② 중소유통경로 583억원(55%)																																	
할인방식	<table><tr><th>구분</th><th>업 태 별</th><th>할인율</th><th>지 원 한도(1인 당)</th><th>할 인 방 식</th></tr><tr><td rowspan="5">오프 라인</td><td>대형마트</td><td rowspan="5">20% + 업체 자체할인</td><td rowspan="5">1만원/1주 *구매 한도 제한 방식으로 변경 가능</td><td rowspan="5">▶ 구매·계산시 자동 할인</td></tr><tr><td>중소형마트</td></tr><tr><td>친환경 매장</td></tr><tr><td>로컬푸드 직매장</td></tr><tr><td>중소형마트 협·단체</td></tr><tr><td></td><td>전통시장</td><td>30%</td><td>2만원/행사기간</td><td>▶ 구매 증빙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 환급</td></tr><tr><td rowspan="2">온라인</td><td>온라인쇼핑몰</td><td>20% + 업체 자체할인</td><td>1만원/1주</td><td>▶ 쇼핑몰 내 할인쿠폰 발급 및 적용</td></tr><tr><td>전통시장 온라인몰</td><td>30%</td><td>2만원/1주</td><td>▶ 쇼핑몰 내 할인쿠폰 발급 및 적용</td></tr><tr><td>온+오프라인</td><td>농할상품권</td><td>30%</td><td>3만원/행사기간</td><td>▶ 모바일 상품권 선할인 구매</td></tr></table>	구분	업 태 별	할인율	지 원 한도(1인 당)	할 인 방 식	오프 라인	대형마트	20% + 업체 자체할인	1만원/1주 *구매 한도 제한 방식으로 변경 가능	▶ 구매·계산시 자동 할인	중소형마트	친환경 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중소형마트 협·단체		전통시장	30%	2만원/행사기간	▶ 구매 증빙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 환급	온라인	온라인쇼핑몰	20% + 업체 자체할인	1만원/1주	▶ 쇼핑몰 내 할인쿠폰 발급 및 적용	전통시장 온라인몰	30%	2만원/1주	▶ 쇼핑몰 내 할인쿠폰 발급 및 적용	온+오프라인	농할상품권	30%	3만원/행사기간	▶ 모바일 상품권 선할인 구매
	구분	업 태 별	할인율	지 원 한도(1인 당)	할 인 방 식																													
	오프 라인	대형마트	20% + 업체 자체할인	1만원/1주 *구매 한도 제한 방식으로 변경 가능	▶ 구매·계산시 자동 할인																													
		중소형마트																																
		친환경 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중소형마트 협·단체																																
		전통시장	30%	2만원/행사기간	▶ 구매 증빙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 환급																													
	온라인	온라인쇼핑몰	20% + 업체 자체할인	1만원/1주	▶ 쇼핑몰 내 할인쿠폰 발급 및 적용																													
		전통시장 온라인몰	30%	2만원/1주	▶ 쇼핑몰 내 할인쿠폰 발급 및 적용																													
온+오프라인	농할상품권	30%	3만원/행사기간	▶ 모바일 상품권 선할인 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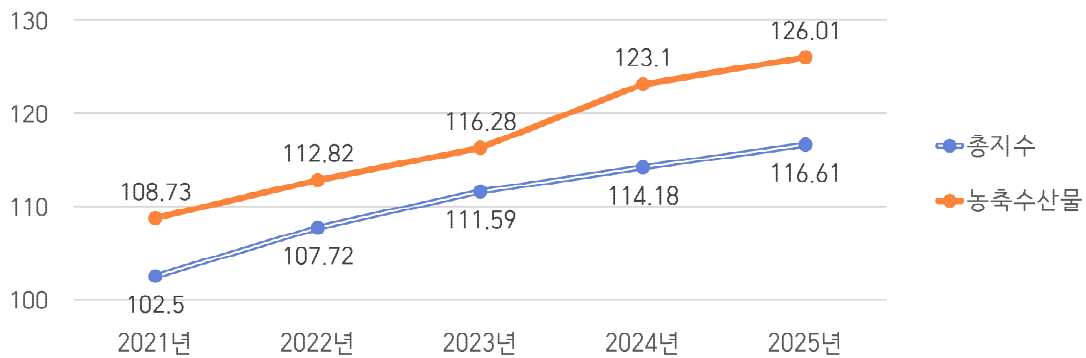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일부 재가공)

□ 참고로, 최근 들어 농축수산물은 연도별 물가지수가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그 상승폭이 전체 상품·서비스에 비하여 큰 한편, 단기적으로도 최근 14개월간 월별 물가지수가 전체 상품·서비스에 비하여 그 변동폭이 커서 불안정함에 따라, 농축수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연도별·월별 농축수산물 물가지수⁴¹⁾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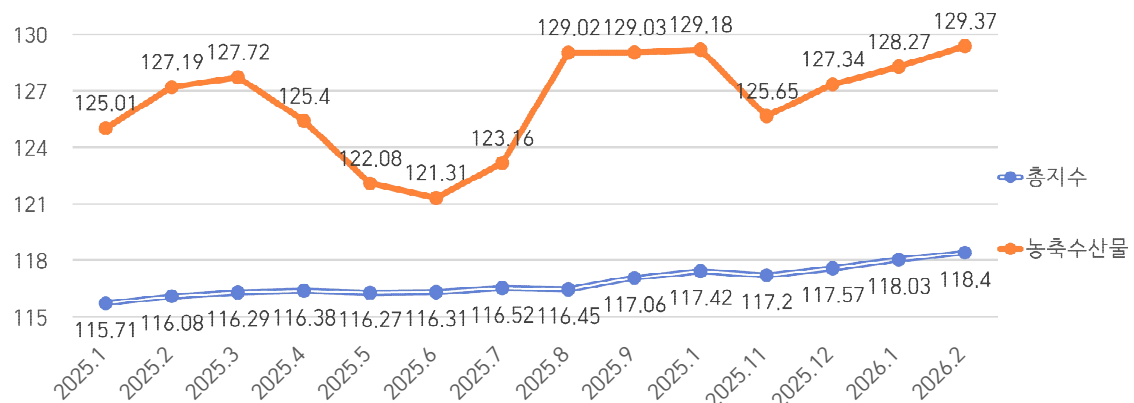
1. 최근 5년간 연도별 농축수산물 물가지수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지수	102.50	107.72	111.59	114.18	116.61
농축수산물	108.73	112.82	116.28	123.10	126.01



2. 최근 14개월간 월별 농축수산물 물가지수

구분	2025년												202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총지수	115.71	116.08	116.29	116.38	116.27	116.31	116.52	116.45	117.06	117.42	117.20	117.57	118.03	118.40
농축수산물	125.01	127.19	127.72	125.40	122.08	121.31	123.16	129.02	129.03	129.18	125.65	127.34	128.27	129.37



※ 주: 2020=100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바탕으로 작성

41) 비교시점의 물가지수는 기준시점(2020년)을 100으로 할 때 비교시점 물가의 높고 낮은 정도를 의미

(2) 검토의견

□ 「국가재정법」은 원칙적으로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 및 기금을 정부가 집행·지출하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되,

예기치 못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⁴²⁾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 및 기금에 변경을 가하거나, 국회의 사후 승인을 조건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내역사업이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신설된 이래로, 동 내역사업에 대하여 매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거나 예비비를 지출하는 등, 예외적 상황에 이루어져야 할 증액 변경을 연례적으로 반복하였음.

또한, 이와 같이 증액 변경이 연례적으로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 단계에서 동 내역사업의 예산을 최근 4년간 1,080억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여 예산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42) 다만,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은 신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① 금융성 기금의 경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3 이하, ② 그 외 기금의 경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서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

【 2020년~2026년 농축산물 할인지원 내역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예비비	예산 현액(B)	증가(B-A)		집행액
	본예산(A)	추경			금액	비율	
2020년	-	41,000	-	41,000	41,000	(순증)	41,000
2021년	77,000	154,000	-	154,000	77,000	100.0	154,000
2022년	39,000	78,000	30,000	108,000	69,000	176.9	108,000
2023년	108,000	108,000	22,500	130,500	22,500	20.8	130,500
2024년	108,000	108,000	58,700	166,700	58,700	54.4	166,700
2025년	108,000	228,000	-	228,000	120,000	111.1	228,000

※ 주1: 2020년의 경우, 동 사업이 아닌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3039-310)” 사업(농안기금)에서 신유통경로 확산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할인지원 예산이 반영되었음

※ 주2: 2021년의 경우, 내역사업명이 “농축산물 할인지원”이 아닌 “농축산물소비활성화”였음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2025년 결산 사업설명자료(Ⅱ-1)”, 2022~2026.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 동 내역사업 예산액을 1,080억원에서 500억원 증액하여, 최근의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할인 판매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한다는 입장이나,

농림축산식품부가 변경하려는 예산액인 1,580억원은 최근 5년간 평균 집행액인 1,574억원에 근접한 금액으로서, 당초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시에도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통상적인 재정수요를 반영하여 편성할 수 있었던 금액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농축산물 할인지원 내역사업 집행액 】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평균
집행액	154,000	108,000	130,500	166,700	228,000	157,44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2025년 결산 사업설명자료(Ⅱ-1)”, 2022~2026.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내역사업의 사업계획 작성 시 예산액을
 ① 사업운영비, ② 인센티브 예산,⁴³⁾ ③ 성수기 할인행사 예산, ④
 상시 할인행사 예산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사용 목적 및 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는 사업운영비, 인센티브
 예산 및 성수기 할인행사 예산을 제외하면, 오직 상시 할인행사 예
 산만이 예기치 못한 농축산물 물가 상승 발생 시 할인지원을 추진
 할 수 있는 예산에 해당함.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례적으로 할인지원 예산의 증액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 예산안의 추가경정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업계획 작성 당시부터 전체 1,080억원의 예산 중 단 4.7%인
 50억 4,200만원만을 상시 할인행사 예산으로 배정하여, 정책 대응에
 필요한 여력을 충분히 남겨놓지 못한 것으로 보임.

【 2026년 사업계획 내 할인지원 예산 배정계획(안) 】

(단위: 백만원, %)

구분	성수기 할인행사				상시 할인행사	인센티브	운영비	총계
	소계	설	추석	김장				
배정액	87,757 (81.3)	39,920 (37.0)	39,920 (37.0)	7,917 (7.3)	5,042 (4.7)	13,200 (12.2)	2,000 (1.9)	108,000 (100.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일부 재가공)

43) 자체할인 및 생산자 상생 협력 실적(납품업체 수수료 인하 등)이 우수한 사업자에게 추가 배정하여,
 업체 간 선의의 경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센티브 예산

- 따라서,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증액변경을 연례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해양수산부 소관]

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총수입 · 총지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추경예산안’이라 함)을 반영한 해양수산부의 2026년 총수입 규모는 수산발전기금에서 300억원이 증액되어 본 예산 1조 1,219억원 대비 2.7% 증액된 1조 1,519억원임.

【 2026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총수입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26년			
	본예산(A)	제1회 추경안(B)	증감(B-A)	(B-A)/A
총수입	11,219	11,519	300	2.7
수발기금	1,288	1,588	300	23.3

자료: 해양수산부

- 2026년도 추경예산안을 반영한 해양수산부의 2026년 총지출 규모는 본 예산 7조 3,566억원 대비 919억원(1.2%) 증액된 7조 4,485억원으로,

이를 회계·기금별로 살펴보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484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106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29억원, 수산발전기금에서 300억원이 증액 편성됨.

【 2026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총지출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26년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B)	증감(B-A)	(B-A)/A
총지출	73,566	74,485	919	1.2
농특회계	15,374	15,858	484	3.1
에특회계	577	683	106	18.3
지특회계	8,146	8,175	29	0.4
수발기금	11,475	11,775	300	2.6

자료: 해양수산부

2. 세부사업 주요 변동 내역

□ 해양수산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5개 세출 사업을 2026년도 본예산 대비 91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사업 증액내역은 아래와 같음.

【 2026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제1회 추경안 세출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명	2026년도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 (B)	증감 (B-A)	(B-A)/A
총 계		225,175	317,078	91,903	40.8
농특회계	수산물해외시장개척	79,098	80,687	1,589	2.0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	46,819	46,819	순증
에특회계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18,661	29,212	10,551	56.5
지특회계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25,668	28,612	2,944	11.5
수발기금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제고	101,748	131,748	30,000	29.5

자료: 해양수산부

II. 검토의견

1. 총괄

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

- 최근 중동발 위기로 인하여 국제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우리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실질국민소득의 증가 둔화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음.

추경예산안의 전체규모는 26.2조원이며 이중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는 919억원으로, 초과세수 및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하여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지원 등을 위해 세출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의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은 수산발전기금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따라 300억원이 증액됨.

세출 추경예산안은 유가 상승에 따른 어업인, 수출기업 및 선사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구성되는데, 회계·기금별로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개 사업(수산물해외시장 개척,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에서 484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에 106억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개 사업(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에 29억원 등 예산 일반

지출에 61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수산물발전기금 1개 사업(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에 300억원이 편성되었음.

목적별로 살펴보면,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2개 사업(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및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민생 안정을 위해 2개 사업(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및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1개 사업(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이 편성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6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제1회 추경안 총괄 】

(단위: 억원)

구 분	2026년	2026년 1회 추경안(B)	
	본예산(A)		증감(B-A, %)
· 총수입(예산+기금)	11,219	11,519	300(2.7)
· 총지출(예산+기금)	73,566	74,485	919(1.2)
- 예산 일반지출	62,091	62,710	619(1.0)
- 기금 일반지출	11,475	11,775	300(2.6)

자료: 해양수산부

【 2026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제1회 추경안 세출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명	2026년도				비고
		본예산(A)	제1회 추경안(B)	증감(B-A)	(B-A)/A	
	총 계	225,175	317,078	91,903	40.8	
농특회계	수산물해외시장 개척	79,098	80,687	1,589	2.0	수출바우처(물류비) 지원
농특회계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	46,819	46,819	순증	어업용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에특회계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18,661	29,212	10,551	56.5	화물선 선박용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등
지특회계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25,668	28,612	2,944	11.5	국가보조항로, 적자항로 운항 여객선 운영비 지원
수발기금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제고	101,748	131,748	30,000	29.5	수산물 할인행사, 온누리환급 등

자료: 해양수산부

□ 먼저,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사업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환율 상승과 전쟁위험 할증료 등에 따른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수산식품 수출바우처 지원 예산을 16억원을 증액하였고,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은 어업용 면세경유를 사용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유가로 인한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468억원을 순증하였음.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사업은 경유 가격 급등에 따른 내항화물 운송사업자 등의 운송비용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가연동 보조금 및 유류비 보조금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10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여객선사의 운영비 상승 등을 감안하여 국가보조항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추가 운영비(결손보상금)와 연안여객항로 지원 대상 선사의 지속적인 운항을 위한 적자 추가 보전 등을 위해 29억원을 증액하였고,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제고’ 사업은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수산물 물가상승, 소비심리 위축 방지를 위하여 온·오프라인 수산물생활인지원사업을 위해 300억원을 증액하였음.

2) 추경 편성 요건에 대한 검토

□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⁴⁴⁾에 따르면,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 세 가지 중 하나의 사유로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야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

한편,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목적적합성,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집행가능성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 필요 있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일반요건】

구분	요건	세부내용
1	목적적합성	추경예산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2	예측불가능성	추경예산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3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4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5	연내집행가능성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예산안을 구성할 것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4)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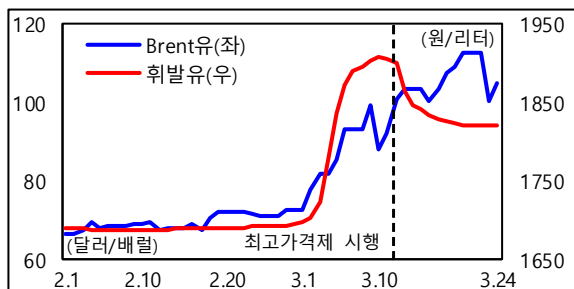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 미국과 이란의 충돌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대외 여건 악화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주요 금융·외환시장 지표에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간경제 전망 보고서('26.3.26.)를 발표하면서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하여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0.4%p 하향 조정한 바 있음.

【최근 경제상황 관련 주요 지표】

국제유가 및 국내휘발유 가격



주요 금융·외환시장 지표

	2.27일	3.10일	3.25일	(2.27일비)
코스피 (pt)	6,244	5,533	5,642	(△9.6%)
국채금리 (%)	3.041	3.283	3.558	(+52bp)
환율 (원/달러)	1,440	1,469	1,500	(△4.0% ^{상하})

자료: 관계부처 합동,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 2026.3.26.

【OECD 성장률 전망】

(% , %p)		OECD 12월(A)	OECD 3월(B)	차이(B-A)
성장률	한국	2.1	1.7	△0.4
	세계	2.9	2.9	-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March 2026: Testing Resilience」, 2026.03.26.

□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민생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하여 에너지 가격 및 물가 안정, 공급망 관리, 취약부문 피해지원, 외환 금융 시장 안정 등을 위해 초과세수 및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그 편성 목적이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제2호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법령상 추경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해양수산부 편성 추경예산안 역시 어업인, 연안화물선, 국가보조항로 등 고유가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고, 수산물 수출 기업에 대한 물류비 보조 및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수산물 물가 안정과 경기침체 대응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경 편성의 목적에는 일응 부합하는 점이 있음.

□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연안화물선 유류비보조 사업의 경우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26.3.27) 등을 반영하지 않아 적정 예산 편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의 경우 집행시점을 추석 등 특정 시기로 예정하고 있어, 추경 편성의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하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민생 지원과 물가 안정 등 추경 편성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 규모와 집행 시기의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수산물해외시장개척 :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차별화된 사업 설계 필요

- 추경예산 편성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중동 전쟁에 따른 정세 불안 및 글로벌 물류 차질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기업의 어려움을 시급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 수출바우처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사업 개요

-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사업⁴⁵⁾은 K-Seafood 글로벌경쟁력 강화와 인지도 제고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①경쟁력강화, ②해외시장확대, ③물류인프라구축, ④해외시장분석센터, ⑤김산업육성 등 5개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쟁력강화 내역사업 중 수산식품 수출바우처 사업에 15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음.

45)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수산물해외시장개척(2837-300)

【 2026년도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예산	2026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
수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	54,563	79,098	80,687	1,589	2.00
경쟁력강화	18,674	29,075	30,664	1,589	5.46
-수산식품 수출바우처	11,626	16,764	18,353	1,589	9.47

(2) 검토의견

- 수산식품 수출바우처 사업은 수출업체 수출 규모에 따라 내수·초보·성장·고도화바우처로 구분하여 수출준비부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까지 수출업체가 필요로 하는 성장사다리형 바우처 제공을 통해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려는 사업으로,

【 2026년 수산식품 수출바우처 지원내용 】

구분	내수바우처	초보바우처	성장바우처	고도화바우처
지원업체	9개소 내외	60개소 내외	58개소 내외	31개소 내외
지원자격	전년도 수산물 수출실적 1만불 미만인 기업	전년도 수출 1만불~50만불 미만 기업	최근 2년 평균 수출 50만불~500만불 미만 기업	최근 2년간 평균 수출 500만불 이상
지원한도	30백만원	50백만원	100백만원	220백만원
	* 한도 내 업체 자율 신청			
지원비율	지원한도 내 총 사업비의 80%(중소기업), 70%(중견기업)			
지원기간	- 매년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연속지원 업체로 선정된 업체만 차년도 연속지원 - 사업 추진기간 : 협약체결일 ~ '26.10.31 * 정산 신청 '26.10.31일까지			

자료 : 해양수산부, 사업 공고문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이며, 공모절차를 통해 지원 업체를 선정 한 후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22개 바우처 사업 메뉴판(참고자료 1)에서 업체의 수요에 맞게 지원사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특징임.

【 2026년 수산식품 수출바우처(메뉴판) 】

단계	사업메뉴	주요 내용
수출 준비	비관세장벽 컨설팅	▪ 통관, 법률, 관세, 해외법인 설립지원, 현지어 표기법, MMPA대응 등
	바이어 매칭	▪ 현지 업체나 플랫폼을 통한 바이어 매칭 수수료 지원
	AI 활용	▪ AI 활용 수출 관련 소프트웨어 이용료 지원, 컨설팅 비용 지원 등
	해외시장조사	▪ 전문 조사기관을 통한 국가별, 품목별 해외시장 정보조사 등
	수출실무 교육	▪ 무역실무, 제품개발, 상품화, 인허가 등 외부교육 수강
	포장디자인 개발	▪ 현지 트렌드에 맞는 수출용 포장패키지 디자인 비용 등
	현지 수입등록 등 지원	▪ 수출국 현지 수입통관 규정에 맞는 제품등록비, 라벨링, 식품검사비용 등
	지적재산권 출원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해외 출원
	국제인증 취득	▪ 해외 식품 규격 및 수출 전략인증 취득 지원
	통·번역 및 서류대행	▪ 비즈니스 통·번역 및 수출선적·통관·계약 대금결제 등 서류대행 지원
	샘플통관운송비	▪ 해외 바이어 대상 무상샘플 송부 시 통관·운송료 지원
	무역애로 해소	▪ 수출 해상, 항공 운임비 지원(단계별 국고보조금의 한도 설정)
	수출 포장재 제작	▪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용 포장재 제작 지원(국고보조금의 10% 한도)
해외 진출	수출용 브랜드 개발	▪ 수출용 브랜드 개발 용역비(BI, CI 제작 등)
	유통업체 판촉	▪ 해외 대형유통매장과 연계한 판촉 홍보
	온라인 판촉	▪ 해외 온라인몰과 연계한 온라인 판촉 홍보
	해외 마켓테스트	▪ 해외 오프라인 소비자 대상 체험(시음시식) 홍보 및 마켓테스트

단계	사업메뉴	주요 내용
	박람회 및 바이어 상담	▪ 국내·외 온·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비용 및 수출 상담회 비용
경쟁력 강화	유망상품화	▪ 신규 수산가공식품 개발용역비, 전문가 자문비 등
	홍보물 제작	▪ 해외 홍보를 위한 홍보물 디자인 개발, 유명IP 라이선스 비용
	미디어 홍보	▪ 해외 매스미디어 매체광고, 온라인 매체 등 활용 홍보(SNS 포함)
	자율공모 사업 * 고도화 대상	▪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체 자율사업 추진 (사업계획 aT 사전승인 필요, 고도화 업체에 한해 메뉴 지원)

자료 : 해양수산부

【 수산식품 수출바우처 사업 추정 산출내역 】

구 분	'26년 예산	추정	산출내역
□ 수산식품 수출바우처	16,764	1,589	
○ 준비바우처	905	-	-
○ 수산식품기업바우처	15,857	1,589	-
① 컨설팅	569	-	-
② 내수바우처(9개사)	216	27	(‘26) 216백만원 = 9개사×30백만원 × 국비80% (추정) 27백만원 = 9개사×3.75백만×국비 80%
③ 초보바우처(60개사)	3,000	300	(‘26) 3,000백만원 = 60개사×625백만원 × 국비80% (추정) 300백만원 = 60개사×6.25백만×국비 80%
④ 성장바우처(58개사)	5,252	580	(‘26) 5,252백만원 = 58개사×1132백만원 × 국비80% (추정) 580백만원 = 58개사×125백만×국비 80%
⑤ 고도화바우처(31개사)	6,820	682	(‘26) 6,820백만원 = 31개사×275백만원 × 국비80% (추정) 682백만원 = 31개사×27.5백만×국비 80%

□ 2026년도 본예산은 내수바우처(9개사)에 2억 1,600만원, 초보바우처(60개사)에 30억원, 성장바우처(58개사)에 52억 5,200만원, 고도화바우처(31개사)에 68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추경예산안은 수산식품 수출바우처 중 당초 국고보조금의 10~20% 한도로만 지원이 가능한 무역애로 해소 메뉴(수출물류비 지원) 지원한도를 높여 개별 기업의 수출바우처 지원한도를 각각 10% 상향하려는 것임.

【 수출바우처 단계별 지원한도, 무역애로해소 항목 지원한도 】

단계	개별 기업별 지원 금액		무역애로해소 항목 지원한도	
	본예산	추경 (10% 증액)	본예산	추경
내수	3,000만원	3,300만원 (+300만원)	지원 금액의 최대 20% (6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초보	5,000만원	5,500만원 (+500만원)	지원 금액의 최대 15% (750만원)	1,400만원 (+650만원)
성장	1억원	1억1,000만원 (+1,000만원)	지원 금액의 최대 10% (1,000만원)	2,200만원 (+1,200만원)
고도화	2억2,000만원	2억4,200만원 (+2,200만원)	지원 금액의 최대 10% (2,200만원)	4,800만원 (+2,600만원)

자료 : 해양수산부

* 비고 : 추경으로 개별 기업별 지원 금액을 10% 증액하였으며, 기업별 지원 금액 내에서 무역애로 해소 항목의 지원상한을 높여 물류비 지원 비율을 높임

- 내수바우처(3,000만원)는 3,300만원, 초보바우처(5,000만원)는 5,500만원, 성장바우처(1억원)은 1억 1,000만원, 고도화바우처(2억 2,000만원)은 2억 4,200만원으로 개별 기업별 지원 금액 상한을 각각 10% 상향하였으며,

개별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 중 무역애로 해소 메뉴(수출물류비 지원) 지원한도를 내수바우처는 1,000만원(종전 600만원), 초보바우처는 1,400만원(종전 750만원), 성장바우처는 2,200만원(종전 1,000만원), 고도화바우처는 4,800만원(종전 2,200만원)으로 상향하여 기업별 지원 금액 내에서 물류비 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수산기업 등과의 간담회⁴⁶⁾에 따르면,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선사들의 중동 항로 운항 중단 및 축소에 따른 운임료 상승이 이어지면서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였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바,

동 사업에서 당초 국고보조금의 10~20%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였던 ‘무역애로 해소’ 메뉴의 지원 한도 비율을 상향하여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측면에서 추경예산 편성의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46) 중동노선 취소 등에 따른 운임료의 전반적인 상승, 수출품 제3국가 계류비용 발생, 항만 대기비용 증가 등의 피해사례를 확인하였으며, 수출바우처 무역애로 해소 항목(물류비 지원) 한도 상향, 유류할증료 지원 등을 건의

(해수부, 중동 상황 관련 수산식품 수출업체 애로사항 청취(2026. 03.11.) : 중동 수출 품목인 김, 게, 어묵, 넙치 등의 수출업체 6곳과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등 5개 수출 지원기관 참석)

【 최근 3년간 세부사업 집행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예산			집행	
	본예산 (A)	추경, 이월금 등 (B)	예산현액 (A+B)	실집행액 (C)	실집행률 (C/A+B)
'23년	429	-	429	370	86.3
'24년	515	-	515	470	91.2
'25년	546	-	546	546	100.0

자료: 해양수산부

또한, 최근 3년간 동 사업의 집행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수산식품 수출기업은 2025년 기준 총 2,758개사⁴⁷⁾로서, 사업에 대한 관련 업체들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수출물류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추경예산안의 연내 집행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수출바우처 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

(단위: 개사)

연도	지원트랙	신청	선정	경쟁률
2023	초보	36	10	3.6:1
	성장	33	17	1.9:1
	고도화	13	8	1.6:1
2024	초보	45	22	2:1
	성장	39	26	1.5:1
	고도화	23	14	1.6:1
2025	초보	80	40	2:1
	성장	57	39	1.5:1
	고도화	28	21	1.3:1

* 자료 : 해양수산부, 신규사업자, 연속사업자 포함

47) 2025년 기준 수산식품(수출)기업현황

수출실적	총계	100만불 미만	100만~1,000만불	1,000만불 이상
수산식품기업현황	2,758	2,314	372	72

- 다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6년도 수산식품 수출바우처 사업을 신청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수출물류비 지원 상한을 상향하는 것으로, 본예산으로 추진하는 기존 사업의 선정 방식, 요건 및 신청시기 등에 있어 차이가 없어 보이는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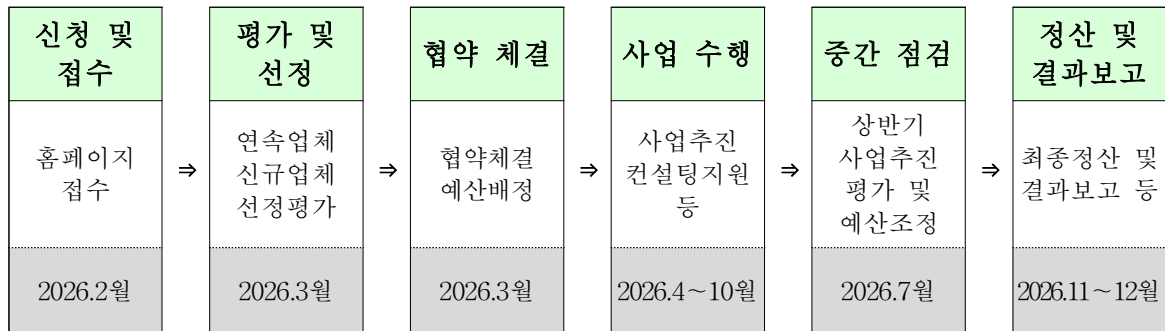
추경예산 편성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중동 전쟁에 따른 정세 불안 및 글로벌 물류 차질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기업의 어려움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기존 수출바우처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먼저,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으로 하고 있는 현행 신청자격에 우선적으로 2026년 중동지역 국가 또는 중동지역을 경유하여 물류를 발송하는 기업과 최근 1년간 중동지역 수출 계약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등 신청 요건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추경예산이 편성된 2026년 4월에는 2026년 본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의 신청 및 선정단계가 종료되었을 것이므로 중동전쟁 관련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긴급바우처제도⁴⁸⁾를 예산소진시까지 실시하여 중동전쟁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⁴⁹⁾.

48) 산업통상부 및 중소기업벤처부의 경우 긴급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음(2026년 3월)

【 2026년 수산식품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 절차(본예산) 】



자료: 해양수산부

- 다음으로, 추경예산의 증액을 통한 수출바우처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통해 평가를 간소화하고 대상기업을 신속하게 선정하여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일반적인 사업 추진의 경우 공고부터 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까지 2개월 가량 소요되고 있어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 보이는바, 추경예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수출바우처 선정기업이 사업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출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출물류 지원을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을 통해 수출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에도 중동 전쟁 발발

49) 한편, 중동 지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의 경우에도 중동 정세 불안으로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2026년도 선정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물류비 지원) 지원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직후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 사업을 추진하여 중동전쟁 상황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산업부·중기부 2026년 긴급 수출바우처 사업 현황 】

구분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명	산업통상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긴급지원바우처)	2026년도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 사업
지원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25년부터 '26년 2월까지 <u>對중동 수출실적 보유 기업</u> - '26년 <u>對중동 수출 계약 기업</u>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1트랙] ① '26년 2월 이후 중동 지역 국가로 물류 발송 기업 ② '26년 이 후 중동지역으로 수출계약 체결 기업 [2트랙] ① '26년도 일반 수출바우처 1차 선정기업으로 <u>최근 1년(25.1 ~ 26.2) 중동지역 직수출 실적 보유 기업</u>
신청 기간	'26. 3. 11.(수) ~ '26. 3. 31.(화)	26년 3월 20일 ~ 예산 소진 시
사업 기간	2026. 2. 1 ~ 2027. 1. 31 (12개월)	'26. 2. 1 ~ 7. 31 (6개월)
모집 규모	약 000 개사(제한 없음)	약 000 개사(제한 없음)
지원 내용	<u>중동 수출애로 해소 지원 위한 물류 특화서비스 제공</u> - 중동 전쟁상황으로 인한 수출물류 애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류 지원항목 신설	물류바우처를 활용, 수출바우처 시스템 內 “국제운송”, 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여 <u>해상 등 다양한 물류서비스 이용</u>

구분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특징	요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u>‘패스트 트랙’을 실시하여 기업 신속 선정(접수 후 3일 이내) 예정</u> *단, ‘패스트 트랙’에서 미선정된 기업은 ‘일반 트랙’ 기업으로 재평가 예정	긴급 물류 대응을 위한 <u>패스트트랙</u> 방식으로 운영되며, 현장평가 없이 <u>최소 요건만 확인하여 접수 후 약 3~4일 내에 지원대상 여부를 안내</u>

출처 : 산업부, 중기부 누리집, 사업 공고문

2)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 상한액 기준 재설정 및 소급 적용 방안 등 검토 필요

- 동 사업은 어업용 면세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여 어업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수산물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바, 유가 변동폭에 대한 정밀한 예측을 바탕으로 어업인들의 실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상한액 기준 재설정 및 소급 적용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 사업 개요

□ 어업용 면세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어업인⁵⁰⁾을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여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출어를 지원하려는 사업⁵¹⁾으로,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에 신규로 468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음.

50)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어업용 면세경유를 공급받은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51)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3440-373)

【 2026년도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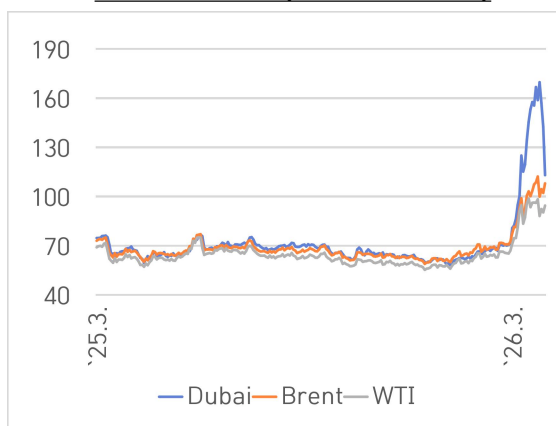
사 업 명	2025년 예산	2026년			
		본 예산(A)	추경안(B)	증감(B-A)	%
어업용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지원	-	-	46,819	46,819	순증

(2)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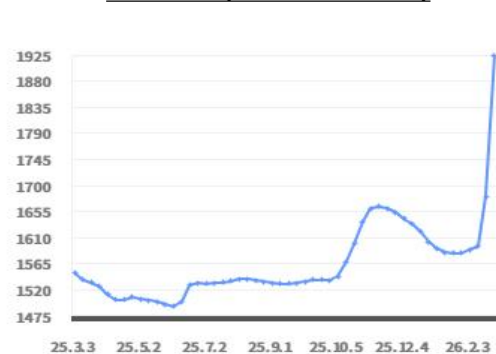
-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선을 상회하고, 국내 경유 가격이 2026년 3월 들어 전년 동기 대비 24% 이상⁵²⁾ 급등함에 따라, 어업 경영의 핵심인 유류비 부담 증가로 어민들의 어려움과 수산물 물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음.

【 최근 유가 상승 추이 】

국제유가 가격(25.3월~26.3월)



국내경유(25.3월~26.3월)



주: 단위는 유가(\$/Bbl), 경유(원/ℓ)

자료: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https://www.opinet.co.kr>> (검색일: 2026.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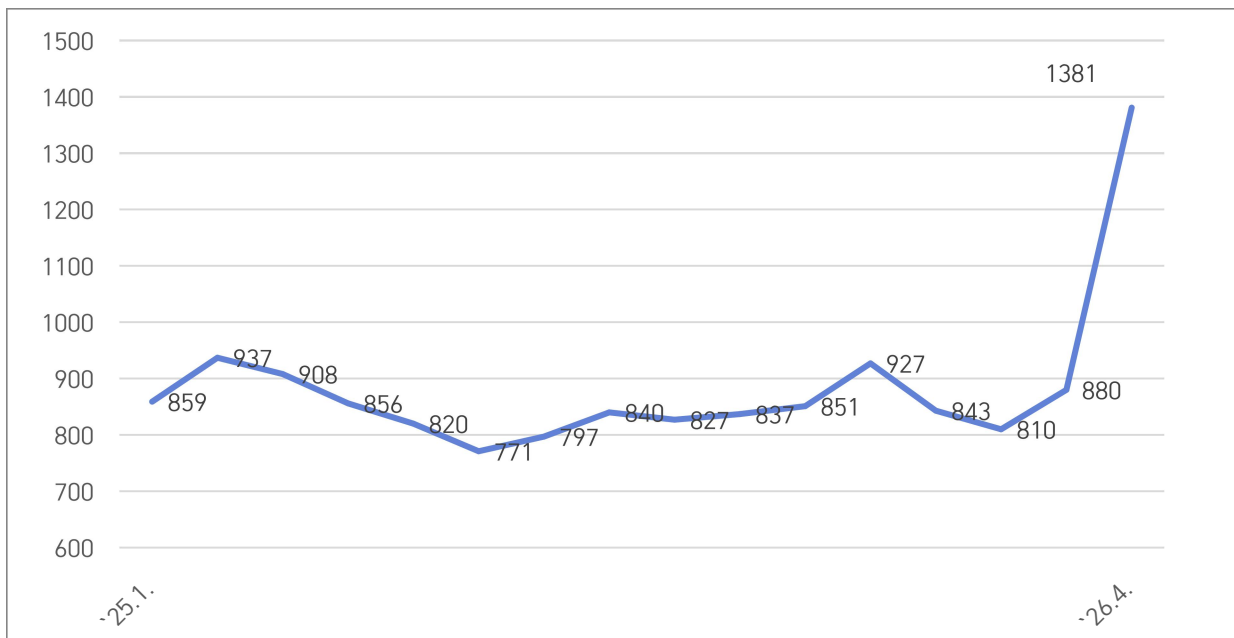
52) 전국 평균 기준, 2025년 3월 3일 1,548원 -> 2026년 3월 2일 1,924원 (한국석유공사, <<https://www.opinet.co.kr>> (검색일: 2026.3.27.))

- 어업용 면세유 공급량 중 경유 비중이 80% 이상이라는 점⁵³⁾, 주요 연근해어업 연평균 출어비 중 연료비 비중이 절반 이상이라는 점 등에서, 유류비 상승은 어업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⁵⁴⁾

그런데 최근 어업용 면세유의 공급가격은 2월 중동 리스크 발발 후 리터당 810원에서 3월 880원으로 인상되었고, 4월에는 1,381원 수준으로 약 5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유류 소모가 많은 어업의 생산 구조 특성으로 어선 어업인들의 경영 여건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임.

【 어업용면세유 가격 추이 】

(단위:원/ℓ)



자료: 해양수산부

53) 2024년 기준 주요 근해어업 평균 출어비(404,295천원) 중 연료비(214,281천원) 비중은 53%(해양수산부, 「어업경영조사」)

54) 2025년 기준 어업용 면세유 공급량(878,234kl) 중 경유(769,994kl) 비중은 약 88%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해양수산부, 「2025년도 어업실태조사」)

이는 어업인들의 조업 활동 축소·중단으로 이어져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해양수산부는 2024년 연근해 어업 경영비 통계 등을 기준으로 어업생산량 약 8% 감소, 면세유 가격 100% 상승을 가정할 경우 수산물 소매 가격이 약 30~45%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추경예산안에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사업”을 반영하여, 국제유가 불안정에 따른 면세 경유 가격 급등으로부터 어업 경영을 보호하고 수산물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 하고 있음.

-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어업용 면세경유 공급가격이 기준가격(1,070 원/ℓ)보다 높을 경우 어업용 면세경유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초과분의 일부(보조율 70%)를 보조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6개월, 지원 상한액은 115.3원/ℓ 으로 책정되어 있음.

보조금은 수협중앙회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집행될 예정이며, 수협중앙회가 어업인별 보조금 지원금액을 산출 및 월별 보조금을 확정하여 해양수산부에 신청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어업인별로 등록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계획임.

【 2026년도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사업 개요 】

※ **지급단가** = [①어업용 면세경유 공급가격(원/ℓ) - ②^{기준가격}1,070(원/ℓ)] × ③^{보조율}70%

① 어업용 면세경유 공급가격* 현황

*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지표(MOPS)에 각종 부대비용을 더한 값으로 수협중앙회가 월별 결정
- ('22) 1,149 → ('23) 957 → ('24) 895 → ('25) 853 → (26.2.) 809.7 → (26.4.) 1,381원/ℓ

② 기준가격(1,070원/ℓ) 및 상한액(115.3원/ℓ) 산정

- 운송·물류업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책정
* 화물자동차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 1700원/ℓ, / 상한액 183.21원/ℓ

③ 보조율 확대 : 50%('22년) → 70%

- 어업인들에 대한 두터운 보조를 위해 과거('22.6~12.) 보조율 50%에서 70%로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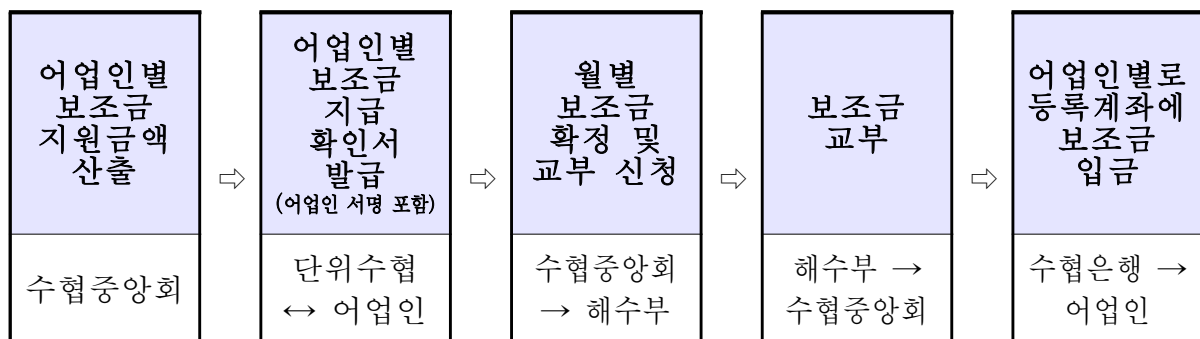
※ **공급량** : 406,065kl ('25.4~9월 면세유공급량 기준)

구 분	'26.4월	'26.5월	'26.6월	'26.7월	'26.8월	'26.9월	합계
공급량(kl, 전년동기 기준)	51,355	55,397	72,236	65,212	71,632	90,233	406,065

※ **추경예산안** : 468억원 = 상한액 115.3원/ℓ × 공급량 406,065kl

자료: 해양수산부

【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절차 】



자료: 해양수산부

□ 동 사업은 과거의 집행 사례 등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유가 변동폭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집행상 불용이나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급등한 국제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편성된 바 있으며, 2024년에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따른 유가 불안정 대응을 위하여 본 예산에 반영되었음.

각 회계연도의 결산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당초 예상보다 유가 상승이 지속되어 어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자 기준가격을 인하(1,100원/ℓ → 1,070원/ℓ)하고 사업기간도 5개월(6~10월)에서 7개월(6월~12월)로 2개월 연장함에 따라, 예산 부족으로 수산공익직불제 등 타 사업에서 84억 6,000만원을 전용하고 예비비 140억원을 확보하여 예산현액 463억 8,500만원 중 448억원을 집행한 바 있음.

반면, 2024년에는 어업용 면세경유 가격이 기준가격(1,070원/ℓ)을 하회하여 편성 예산 45억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기준가격을 1,070원/ℓ, 사업기간은 6개월로 책정하고 있어 2022년 및 2024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한 것

으로 보이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국제 유가 변동폭에 대한 최신 예측치, 석유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유가 안정 효과⁵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업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 각 연도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사업 결산 】

(단위 : 억원, %)

연도	예산			집행	
	본 예산(A)	추경, 이월금, 등 (B)	예산현액 (A+B)	실 집행액 (C)	실 집행률(%) (C/A+B)
2022	-	464	464	448	96.6
2024	45	-	45	-	-

자료: 해양수산부

【 각 연도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사업 비교 】

연도	상한액				물량		
	계	최대공급가	기준가격	보조율	계	월평균	지원기간
2022	54.5원/ℓ	1,209원/ℓ	1,100원/ℓ	50%	438,280kl	87,656kl	5개월
2024	11원/ℓ	1,092원/ℓ	1,070원/ℓ	50%	409,728kl	68,288kl	6개월
2026 추경안	1153원/ℓ	1,235원/ℓ	1,070원/ℓ	70%	406,065kl	67,678kl	6개월

주: 2022년의 경우 사업 집행과정에서 기준가격 인하(1,100원/ℓ ->1,070원/ℓ) 및 사업기간 2개월 연장

자료: 해양수산부

- 둘째, 지원 상한액 기준이 어업인들의 유가 상승에 대한 손실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업인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율을 5

55) 3월 13일부터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실내 등유 등에 대한 최고가격제가 적용되었고, 3.27부터 어업용·선박용 경유까지 그 적용이 확대됨(관계부처 합동,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 2026.3.26.)

0%에서 70%로 상향했으나, 지원 상한액은 115.3원/ℓ 수준임. 이는 2022년(54.5원/ℓ)과 2024년(11원/ℓ)의 지원 상한액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어업용 면세경유 공급가격이 일정 수준(약 1,235원)⁵⁶⁾을 넘어서는 경우 상한액만큼만 지급되므로, 보조율 상향의 의미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해양수산부는 지원 상한액 기준을 화물차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수준⁵⁷⁾과 맞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화물차의 경우 유가연동보조금 외에도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방안’에 따른 유류세 인하 혜택⁵⁸⁾으로 유가 상승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반면, 어업인의 경우에는 이미 평소에 면세유 사용으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나, 최근과 같은 고유가 시기에 유류세 추가 인하 등의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과세유 사용자에 비하여 유가 상승분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비용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연동보조금이 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정 지원 상한액 기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 셋째, 집행 시점과 피해 발생 시점 간의 시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56) 지원 상한액(115.3원) $\geq$ [어업용 면세경유 공급가격(원/ℓ) - 기준가격(1070원/ℓ)] $\times$ 보조율(70%)

57) 기준가격 1,700원/ℓ, 지원 상한액 183.21원/ℓ (기준가격 대비 10.78%)

58)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관계부처 합동, 2026.3.26.)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는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조정되고, 기존 대비 추가 인하폭은 휘발유는 리터당 △65원(763→698), 경유는 리터당 △87원(523→436)임.

추경예산안의 편성근거에 따르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분 지원을 가정하고 있으나, 현재 유가 상승은 3월부터 시작되고 있고, 이때부터는 봄철 성어기로 면세류 소비량이 겨울철 대비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어업인들의 조업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지원 기간을 유가 상승이 시작된 3월로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집행 시점부터의 기간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피해 기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산식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년간 어업용 면세경유 월평균 사용량 】

(단위: kℓ)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평균	76,060	67,127	67,865	64,403	64,166
합계	912,721	805,520	814,382	772,835	769,995
1월	72,664	89,276	66,249	72,057	68,466
2월	60,081	56,337	57,296	51,931	34,387
3월	73,135	73,289	67,727	45,843	51,062
4월	56,492	39,734	49,106	61,413	51,355
5월	65,325	60,981	53,925	45,129	55,397
6월	80,478	62,579	66,461	59,791	72,236
7월	76,580	37,526	78,467	67,099	65,212
8월	78,684	78,484	87,613	64,319	71,632
9월	96,196	91,202	79,625	75,217	90,233
10월	105,867	83,776	75,253	91,277	73,107
11월	71,971	74,538	63,732	71,773	79,267
12월	75,248	57,798	68,928	66,986	57,641

자료: 해양수산부

참고로, 해양수산부 추경예산안 중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해양수산부고시, 2026.3.24. 개정)에 따라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에 대하여 운항결손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추경예산안 중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3월 사용분에 대해서도 환급 등의 방식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임.

【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편성내역 】

(단위: 억 원)

세부사업(내역사업)	2025년 본예산	2026년		비고
		본예산	추경안	
■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244	257	+29	· 여객수요 감소 등 선사 경영 부담 완화 위한 지원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35	35	+8	· 적자항로 운항 여객선 운영 적자 보전 - 항로당 0.72억 × 15개 항로 × 9개월

자료: 해양수산부

【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편성내역 】

(단위: 억 원)

세부사업(내역사업)	2025년 본예산	2026년		비고
		본예산	추경안	
■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지원	-	-	+78	·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농업용 면세유 가격 급등에 따른 시설농가 경영부담 완화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지원)	-	-	+78	· 등유·중유 등 유종별 면세유 사용량('25년 3,491만 사용량 합계) × 유종별 평균가격의 88.5%('22년 5월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종합컨대, 동 사업은 중동발 유가 상승의 충격으로부터 어업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수산물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인 바, 유가 변동폭에 대한 정밀한 예측을 바탕으로 어업인들의 실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상한액 기준 재설정 및 소급 적용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 등을 고려한 보조단가의 적절성 검토 필요

- 해양수산부는 유류세 인하와 선박용 경유 최고가격제 등을 고려하여 보조단가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본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유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사업 개요

□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사업⁵⁹⁾은 연안화물선에 대한 경유 유류세액 인상분 및 유가연동 보조금을 보조하여 내항화물운송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하여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를 위해 필요한 예산 105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음.

【 2026년도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예산	2026년			
		본예산(A)	제1회 추경안(B)	증감(B-A)	%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16,873	18,661	29,212	10,551	56.5

59) 회계(기금)-세부사업: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6159-300)

(2) 검토의견

□ 호르무즈 해협 봉쇄('26.2.28.)로 경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운항비용이 증가하여 선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추가적인 유류비 보조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이 제기됨.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리터당 경유 판매가격⁶⁰⁾은 2026년 2월 평균 1,587원에서 3월 10일 기준 1,931원까지 상승함.

【 2026년 2월 평균 및 3월 주요 일자 경유 판매가격 】

(단위: 원/리터)

일자	2월 평균	3.1.	3.4.	3.7.	3.10.	3.13.	3.16.	3.19.	3.22.	3.25.
가격	1,587	1,600	1,728	1,910	1,931	1,872	1,831	1,819	1,816	1,815

- 특히, 2026년 3월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의 적용을 받은 육상용 경유와 달리 해상용 경유에 대해서는 최고가격제 적용이 3월 26일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통해 결정되어, 유가 상승에 따른 해운업계의 충격이 비교적 클 것으로 우려됨.

□ 해양수산부고시인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에 의하면, 유류비 보조는 유류세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유류세보조금 지급단가⁶¹⁾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⁶²⁾는 다음

⁶⁰⁾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 기준

과 같은 산식에 의해 결정됨.

- 유류세보조금 지급단가

: 지급단가(원/ℓ) = 현재 경유유류세(원/ℓ) - '01.6월 당시 경유유류세(183.21원/ℓ)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

: 지급단가(원/ℓ) = {평균 판매가격(원/ℓ) - 기준가격(1,700원/ℓ)} * 0.7

□ 유류세보조금과 관련하여,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유류세는 449.79원/ℓ로 이를 바탕으로 보조단가가 266.58원/ℓ로 책정되었으며, 최근 3년 경유 평균 소요량 68,921kℓ를 고려하여 70,000kℓ(수량)에 266.58원/ℓ(단가)를 곱한 18,66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본예산 편성 당시와 다르게 2025년 11월 1일부터 유류세가 475.875원/ℓ로 인상되어 보조단가 역시 292.665원/ℓ으로 상승하였으나 중동 전쟁에 따른 대응방안⁶³⁾으로 경유 유류세가 2026년 3월 27일부터 396.21원/ℓ로 하락하며 보조단가 역시 213원/ℓ으로 하락함.

61)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5조(유류세보조금 산정방법) ① 경유에 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단가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算定)한다.

지급단가(원/ℓ) = 현재 경유유류세(원/ℓ) - '01.6월 당시 경유유류세(183.21원/ℓ)

② 유류세보조금을 신청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류세보조금은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주유량은 별지 제2호서식 식유제품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실제 주유 받은 경유량으로 한다.

지급단가(원/ℓ) = 현재 경유유류세(원/ℓ) - '01.6월 당시 경유유류세(183.21원/ℓ)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유류세보조금 지급단가가 변경될 경우 지방청장에게 지급단가와 그 산정근거를 통보해야 한다.

62)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5조의2(유가연동보조금 산정방법) 경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평균 판매가격(원/ℓ) - 기준가격(1,700원/ℓ)}의 70퍼센트로 하며, 지급액은 183.21원/ℓ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에 따라 유류세 감면(78.96원/ℓ)을 받는 경우에는 104.25원/ℓ을 한도로 지급한다.
2. 지급단가를 산정할 때 경유가격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www.opinet.co.kr)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되, 구매일이 속한 해당 주(週)에 발표하는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한다.
3. 경유 구매일은 출하전표일을 기준으로 하되, 출하전표일과 실거래일이 7일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출하전표일을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거래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일 또는 거래명세표 거래일을 구매일로 하여 지급할 수 있다.

63) 관계부처 합동,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

【 유류세 변동에 따른 보조단가 변동 추이 】

부 과 세	세 액(원/ℓ)								
	인하 전	21112~ '22.4.30. (△20%)	2251~ '22.6.30. (△30%)	227.1~ '24.6.30. (△37%)	247.1~ 10.31. (△30%)	2411.1~ '25.4.30. (△23%)	255.1~ '25.10.31. (△15%)	2511.1~ '26.4.30. (△10%)	26327~ '26.5.31. (△25%)
교통·에너지·환경세*	375	300	263	238	263	289	319	337.5	281
교육세**	56.25	45	39.45	35.70	39.45	43.35	47.85	50.625	42.15
지방세 (자동차세)* **	97.5	78	68.38	61.88	68.38	75.14	82.94	87.75	73.06
유류세 합계(A)	528.75	423 (△105.75)	370.83 (△157.92)	335.58 (△193.17)	370.83 (△157.92)	407.49 (△121.26)	449.79 (△78.96)	475.875 (△52.875)	396.21 (△132.54)
2001년 유류세 (B)	183.21	183.21	183.21	183.21	183.21	183.21	183.21	183.21	183.21
보조단가 (C=A-B)	345.54	239.79	187.62	152.37	187.62	224.28	266.58	292.665	213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⁶⁴⁾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0/1000

□ 유가연동보조금과 관련하여,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은 2026년 2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회의(2026. 2. 26.)’ 결과 2026년 4월까지로 연장되었으며, ‘비상경제장관회의(2026. 3. 11)’ 결과 지급단가 산식에 들어가는 비율을 종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함.

-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이 진행중이었으나, 2023년 이후 선박용 경유 가격이 줄곧 1,700원/ℓ 이하로 유지되

6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6년 5월 31일까지는 리터당 281원으로 한다.

어 왔기 때문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

【 2022~2025년 분기별 경유 가격⁶⁵⁾ 추이 】

(단위: 원/ℓ)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선박용 경유	1,381	1,773	1,817	1,754	1,501	1,368	1,413	1,539	1,401	1,418	1,399	1,355	1,430	1,375	1,425	1,490
자동차 경유	1,520	1,892	1,770	1,676	1,436	1,319	1,471	1,461	1,412	1,399	1,372	1,377	1,454	1,383	1,437	1,499

□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는 유가 상승이라는 대외적 충격과 그에 따른 제도의 대내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유가연동 보조금에 필요한 6,224백만원 및 유류세 보조금에 필요한 4,327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유가 급등에 따른 선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섬 지역 생활 물품 운송 선사의 운항 중단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됨.

- 유가연동 보조금의 보조단가는 일반물량 지급상한선(183.21원/ℓ)과 해운조합(감세) 공급물량 지급상한선(104.25원/ℓ)에 대해 물량(40:60)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135.83원/ℓ으로 책정되었으며, 물량은 월 평균 사용량 6,546kℓ에 7개월⁶⁶⁾을 곱한 값으로 계산됨.
- 유류세 보조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유류세 인상(‘25.11.)으로 변경된 보조단가(266.58 → 292.665)와 3년 평균물량인 78,547kℓ를 반영하여 부족예상분이 계산됨.

65)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공시 대리점 평균판매가격

66) 2026년 3월부터 9월까지에 대한 보조금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3월부터 지급 가능한 점이 고려되었음

【 2026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

‘26년 예산		‘26년 추경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661	○(유가연동 보조금) 미편성(예측불가) ○ (유류비 보조금) 18,661백만원 =266.58원/ℓ (보조단가)*70,000kℓ (물량)	29,212	○(유가연동 보조금) +6224백만원 =135.83원/ℓ *6546kℓ (월 평균)*7개월 ○ (유류비 보조금) +4,327백만원 =26년도 소요예산(292,665원*78,547kℓ) -26년도 편성예산(266.58원*70,000kℓ)

□ 동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점을 고려한 편성 및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최근 유류세가 대폭 인하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와 비교했을 때 경유 유류세는 약 12% 감소(449.79 → 396.21)하였으며, 보조단가는 약 20% 감소(266.58 → 213)하였음.

참고로, 2022년 본 사업의 예산은 당초 62,197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2차 추경을 통해 28,000백만원 감액되어 34,197백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19,554백만원으로 실집행률이 57.2%가 되어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는데,

해양수산부는 그 원인으로 ①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높아짐에 따라 두 차례(‘22.5.1., ‘22.7.1.)에 걸쳐 유류세를 인정한 점과 ② 당시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선박 연료를 중유에서 경

유로 전환함에 따라 소요 예산을 과다 추산한 점을 제시한 바 있음.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25년 11월의 유류세를 기준으로 유류세 보조금의 보조단가가 책정되었으나, 2026년 3월 27일부터 유류세가 다시 인하되어 유류세가 오히려 본예산 편성 당시보다 더 낮아졌으므로 최근의 유류세 변화를 고려한 예산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과거 유사 사례⁶⁷⁾를 참고하였을 때 향후 고유가 현상이 지속하여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2025년 예산 편성 당시의 유류세에서 두 차례에 걸쳐 유류세가 인상⁶⁸⁾되어 발생한 지급 부족분⁶⁹⁾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적절히 고려하여 추경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유가 연동 보조금 보조단가의 적절성은 함께 시행되고 있는 유가 부담 완화 정책과 과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일반물량에 대한 지급 상한선(183.21원/ℓ)은 경유 가격이 리터당 약 1961.73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단가이므로, 본 예산안은 경유 가격

67)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두 차례('22.5.1., '22.7.1.)의 유류세 인하

68) 보조단가 변화 추이(원/ℓ): ('24.11.~'25.4.) 224.28 → ('25.5.~'25.10.) 266.58 → ('25.11.~'26.3.) 292.665
2025년 예산 편성 단가: 239.79원/ℓ

69) 2,335백만원 = 272.764원/ℓ (지급부족 평균단가) * 8,561kℓ (지급부족 물량)

이 리터당 약 1961.73원 이상인 상황이 7개월간 지속된다는 것을 가
정하여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하여 유가가 급등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부
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고가격제⁷⁰⁾ 및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이 병
행되고 있음. 아울러,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⁷¹⁾ 당시에도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었으나 리터당 1,900원 이상의 지속 기간은 약
4개월이었음.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 보조단가의 결정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022년 월별 경유 가격⁷²⁾ 】

(단위: 원/ℓ)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격	1,454	1,537	1,827	1,906	1,964	2,089	2,085	1,889	1,850	1,838	1,879	1,783

셋째, 본 사업은 연안 화물선 중 경유 선박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보
조해주는 사업⁷³⁾으로, 경유 외의 연료를 이용하는 화물선과의 형평
성을 고려한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70) 2026년 3월 27일부터 적용되는 선박용 경유의 최고액은 리터당 1,923원이며 이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최고
가격을 의미함

71) 2022년 2월 24일 침공 개시

72)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 기준

73)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해양수산부고시)」

제4조(유류세보조금 지급 대상) ① 유류세보조금은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내항화물운송
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렌딩(Blending)유를 포함
하되, 함유된 경유량에 한정한다)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유가 포함된 석유제품이라 하더라도 경유 이외의 유류로 분류되어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는
유류(LRFO, B-A, B-C 등 중유로 분류되는 유류를 말한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유를 구매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 외 사업구역 일시 운송신고 후
외항구간을 운항하는 경우 외항구간에서 사용한 경유 중 유류세를 환급받은 부분은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양수산부에 의하면, 1,908척의 연안화물선 중 527척(27.6%)만이 경유 선박이고 그 밖의 선박은 중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거나 자항 능력이 없는 부선(浮船)임.

특히, 2026년 3월 27일부터 선박용 경유에 대해서만 최고가격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유·LPG 선박 등의 유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 사업관리 철저 및 사고 이월 재발 방지 필요

- 해양수산부는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고 집행 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며 전년도 발생한 사고 이월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1) 사업 개요

□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사업⁷⁴⁾은 보조항로, 적자항로 및 1일 생활권 구축 항로,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소외도서 등의 운영·지원을 통해 도서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항로 운영비용 증가에 대응하여 필요한 예산 29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음.

【 2026년도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예산	2026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24,390	25,668	28,612	2,944	11.5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20,032	21,400	23,529	2,129	9.9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3,458	3,458	4,273	815	23.6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900	810	810	-	-

74) 회계(기금)-세부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6136-300)

(2)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사업은 사업채산성이 없는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여객선을 운항토록 하는 사업으로, 29개 국가보조항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본예산으로 21,400만원이 편성되었음.

본 내역사업은 지방해양수산청(이하 “지방해수청”이라 함)이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전계약금을 지급한 후 사업자가 선박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짐.

다만, 해양수산부훈령인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별표 1]⁷⁵⁾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과거 유가 급등에 따라 유류비 조정분이 과다 발생한 경우,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전용한 바 있음.

75) 나. 계약금액 조정

1) 예정가격 산출시 예상단가변동율을 이미 반영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인정하지 않되,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유류비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 또는 하락 등으로 유류의 설계기초가격 산정시 산출된 금액보다 3퍼센트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 전국 보조항로에 일괄 적용한다.
나) 수입금의 경우, 선사의 노력이 아니라 도로신설 등의 외생변수로 큰 폭으로 증감하여, 당초 입찰에 의한 결손액 지급이 부당한 것으로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정 가능하다.
다) 그 밖에 「선원법」 및 「선박안전법」 등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거나 부당하게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유류비 조정분 발생으로 인한 예산 전용 사례 】

연도	전용 내역
2022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에서 2,167백만원 전용
2023	연안선박 현대화지원(2,233), 국고 여객선 건조(396), 관공선 건조 및 운영(730) 사업에서 총 3,359백만원 전용

【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3,231	13,231	15,398	15,398	-	15,398	15,398	-	-	116.4
2023	16,498	16,498	19,821	19,821	-	19,821	19,821	-	36	120.1
2024	19,873	19,873	19,873	19,873	-	19,873	19,869	-	4	99.9
2025	20,032	20,032	20,370	20,482	-	20,482	20,370	58	54	101.7

□ 내역사업인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사업은 적자항로 및 섬-육
지간 1일 생활권 구축항로의 운항결손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
는 사업으로,

5개의 1일 생활권 항로(국비 50%) 및 10개의 적자항로(국비 70%
이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본예산으로 총 3,458백만원이 편
성되었음.

본 내역사업은 사업자가 운항결손액⁷⁶⁾을 신청하면 지방해수청이 사업자 정산결과를 검토한 후 결손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짐.

- 과거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한시적 준공영제⁷⁷⁾’를 시행하기 위하여 2021년 추경으로 50억원을 편성한 바 있음.

□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26.2.28.)로 인해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유류비를 비롯한 전반적인 항로 운영비용이 증가하여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내역사업의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발생하고,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신청하는 운항결손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⁷⁸⁾

76) 「해운법 시행령」

제11조(운항결손액의 결정 및 지급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은 해당 보조항로사업자가 보조항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을 말하며, 그 세부적인 항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운항결손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항로의 운영기간 동안 매분기별로 보조항로사업자에게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도별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77) 한시적 준공영제는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여객 수요의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로 발생하는 항로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적자 항로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과 유사하나, 요구되는 적자의 기간이 더 짧고(1년) 결손액의 20% 수준만 보조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78) 참고로,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58개의 일반 항로는 본 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여객항로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해 면세유가 적용되고 있어 유류세 인하를 통한 부담 경감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 선박용 경유 최고가격제가 실시되었다고 밝혔으며, 경유 외의 연료에 대한 최고가격제는 신중 검토 단계라고 밝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역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내역사업에 필요한 2,129백만원과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내역사업에 필요한 815백만원을 증액하여 도서주민의 교통권과 해상교통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임.

- 예산액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경영 정보 등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해양수산부는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의 평균 편성단가에 일정 비율을 곱한 값으로 산출하였다고 밝힘.

【 2026년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내역사업 별 추경 산출근거 】

내역사업	산출근거
①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계약금액 조정분 2129백만원 =29개 항로×147백만원*×6개월 *’26년 예산 편성 평균단가 658백만원의 약 20%
②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운영비 적자분 815백만원 =(1일 생활권 5개 항로×140백만원*×50%+ 적자항로 10개×105백만원**×70%)×9개월 *’26년 예산 편성 평균단가 533백만원의 약 25% **’26년 예산 편성 평균단가 304백만원의 약 35%

□ 동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점을 고려한 편성 및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사업 지원 현황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6년 본예산 및 금번 추경 예산안은 5개의 1일 생활권 구축 향로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되었는데, 2026년 4월 현재 동 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는 1일 생활권 구축향로는 3개임.⁷⁹⁾

따라서 예산의 편성 취지에 맞고 편성된 예산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지원향로를 추가로 모집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2025년에 중간정산 후 하반기에 2곳을 추가 선정한 바 있으며, 2026년에도 하반기 추가 모집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둘째, 동 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자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가보조향로 결손보상금 내역사업은 운항비용이 커질수록 보조금이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국가보조향로 위탁 선사가 수익성을 개선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함.

따라서 방만한 운영 및 비용 부풀리기 등의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현재 향로단절을 방지하고 재정효율성을 제

79) 해양수산부에 의하면, 당초 5개 향로가 접수되었으나 향로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4개 향로가 선정되었으며, 그 중 1개 향로는 선사 내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을 취소함

고하기 위해 국가보조항로의 운영을 민간선사 위탁에서 공공기관 위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셋째, 2025년 사고 이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지특회계의 세수 부족에 따라 시스템상 지출처리가 불가하여 예산 중 일부가 사고 이월 처리된 바 있음. 구체적으로,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집행불가 예산 58백만원과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집행불가 예산 420백만원이 이월되었음.

특히,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내역사업은 2025년 예산액 3,458백만원 중 450백만원이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사업으로 자체전용되고 420백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실행률이 74.8%로 저조했음.⁸⁰⁾

세수 부족에 따른 이월은 결과적으로 전년도의 세출예산 사업을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⁸¹⁾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지특회계의 세계잉여금 및 2026년 세입예산 등을 고려하여 세수 부족에 따른 사고 이월이 재발하지 않게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0) 해양수산부에 의하면, 2025년 인천 i 바다페스 사업이 처음 시행되어 종전에 적자가 가장 컸던 인천 지역 항로의 적자폭이 예상보다 많이 감소함

81)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5)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수산물상생할인지원 사업의 재원 배분 비율 재조정 필요

- 중동 전쟁에 따라 불안한 소비 심리를 시급히 회복하고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 편성 목적에 따라 추경의 조기 집행을 위해 사업별 재원 배분 비율을 재조정하고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사업 개요

□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⁸²⁾의 내역사업인 수산물상생할인지원 사업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전국 오프라인 판매처 및 온라인몰 등 주요 소비처 중심의 할인행사,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할인지원 등을 실시하는 사업임.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전국 오프라인 판매처 및 온라인몰에서의 할인행사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확대에 필요한 사업비 및 홍보·운영을 위한 예산 300억원을 증액⁸³⁾하였음.

【 2026년도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계획액	2026년			
		계획액(A)	변경안(B)	증감(B-A)	%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151,748	101,748	131,748	30,000	29.4
수산물상생할인지원	150,000	100,000	130,000	30,000	30.0

82) 회계(기금)-세부사업: 수산발전기금-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3044-311)

83) 추경 재원(300억원) : 농특회계 전입금

【 수산물상생할인지원 사업 추정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 (요구) 온·오프라인 할인행사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확대에 필요한 사업비 285억원, 홍보·운영비 15억원 증액 요구
- (산출) (온·오프라인) 20,000백만원 = 200만건×10,000원×국비 100%
 (온누리상품권) 8,500백만원 = 85만건×10,000원×국비 100%
 (홍보·운영비) 1,500백만원 = 1식×1,500백만원×국비 100%

(2) 검토의견

-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하여, ① 전국 오프라인 판매처(대형마트·중소유통) 및 온라인쇼핑몰에서 수산물 구매 시 할인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7회) 및 찾아가는 직거래장터 개최, ②설·추석에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③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발행, ④지자체 여건에 맞는 직거래 장터, 지역행사 등과 연계된 수산물 할인 지원 사업으로 구성됨.

【 수산물 상생할인사업 예산 개요(2026년도 본예산) 】

구 분		내 용
온·오프라인 할인 지원	예산	○ 본예산 : 500억원 - 온·오프라인 유통사 할인지원 : 480억원 -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 20억원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온·오프라인-480억원) 전국 오프라인 판매처 및 온라인몰에서 수산물 구매 시, 최대 50%*를 할인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개최(7회) * 정부 지원 20% + 업체 자체할인 최대 30% 명절 물가 관리 등 필요시 한시적으로 한도(1→2만원) 및 할인율 상향(20→30%) - (참여대상) 공모로 선정한 온·오프라인 유통사 45개사와 연계 - (할인대상) 대중성어종 6종(고등어 등), 김 및 업체 자율품목 등 ○ (찾아가는 직거래장터-20억원) 어업인 참여 확대를 위해 유통업체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운영 *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오프라인 점포가 입점하지 않은 56개 지자체 중심으로 실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예산	○ 본 예산 : 320억원
	사업 내용	○ 설·추석 등에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 2만원 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연 2회) * (구매가격) 3만 4천원 이상 ~ 6만 7천원 미만→ 1만원 환급, 6만 7천원 이상→2만원 환급 - (상품권) 설 및 추석행사 각 160억원 상당 상품권 환급 - (대상시장) 근접 시장, 인근 점포, 골목형 상점가, 5일장 등 매 행사 최대 200개 시장에서 운영 - (행사품목) 전통시장 내 지정 점포에서 판매하는 국산 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제로 페이	예산	○ 본 예산 : 80억원
	사업 내용	○ 제로페이(한국간편결제진흥원)와 연계하여 제로페이앱을 통해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모바일상품권을 20% 선(先)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권을 수산물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발행기간) 1월~6월, 8월~9월 매주 목요일(설, 추석 기간 포함) - (행사품목) 국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원물 비중 70% 이상 가공품 * 수입 수산물 또는 행사 미해당 상품은 상품권 결제 불가

구 분		내 용
지자체	예산	○ 본예산 : 10억원
	사업 내용	○ 지자체 여건에 맞는 수산물 할인행사,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 (할인율 20%) * 국비 50%:지방비 50%
홍보 운영비	예산	○ 본예산 : 90억원
	사업 내용	○ 대행용역, 홍보용역, 유통사 가격 모니터링, 소비자 만족도 조사 용역, 효과분석 용역, 법률자문료, 운영관리비 등

자료 : 해양수산부

□ 추경예산안은 온·오프라인 유통사 할인지원 사업에 200억원, 전통 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80억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운영 경비로 15억원 등 총 300억원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 온·오프라인 유통사 연계로 실시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연 7회)의 각 행사별 지원액을 상향하여 본예산 480억원에 총 200억원을 추가 증액⁸⁴⁾하고, 추석에 실시예정인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의 본예산 160억원에 추경예산 85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온누리상품권 환급지원액 확대에 따른 환급행사 지원 경비에 필요한 15억원을 배정하겠다는 계획임.

84)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금번 추경예산 중 대한민국 수산대전에 증액되는 200억원의 세부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4월 수산인의 날 특별전에 15억원, 5월 가정의 달 특별전에 15억원, 6월 여름맛이 특별전에 30억원, 7월 여름휴가 특별전에 30억원, 추석 특별전에 70억원, 11월 김장철에 40억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겠다는 설명임

【 2026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안 비교 】

구 분		본 예산	추경 예산안	추경 산출내역
전 체 예 산		1,000억원	1,300억원 (300억원 증액)	
온·오프라인 할인		500억원	700억원 (200억원 증액)	
	온·오프라인 유통사 할인	480억원	680억원 (200억원 증액)	대한민국 수산대전(7회)의 각 행사별 지원액을 상향함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20억원	좌동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320억원	405억원 (85억원 증액)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액으로 85억원 추가 배정
제로페이		80억원	좌동	-
지자체 상생할인		10억원	좌동	-
홍보·운영비		90억원	105억원 (15억원 증액)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운영경비

자료: 해양수산부

【 2026년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 일정(안) 】

(단위 : 억원)

구분	행사명	일정	예산 집행 계획	
			본 예산	추경(안)
온·오프라인 유통사 할인 (7회)	설 특별전	1.29(목)~2.22(일)	130	130
	4월 수산인의 날 특별전	3.25(수)~4.12(일)	60	75(+15)
	5월 가정의 달 특별전	5.6(수)~5.24(일)	60	75(+15)
	6월 여름맞이 특별전	6.17(수)~7.5(일)	50	80(+30)
	7월 여름휴가 특별전	7.29(수)~8.16(일)	50	80(+30)
	추석 특별전	9.9(수)~10.4(일)	80	150(+70)
	코리아수산페스타(김장철)	11.4(수)~22(일)	50	90(+40)
	계		480	680(+200)

구분	행사명	일정	예산 집행 계획	
			본 예산	추경(안)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차량 이동형)	연중	20	-
	* 수산물 생산단체, 수산물 유통 관련 단체가 협업하여 운영			
온누리 상품권 (2회)	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2.10(화)~14(토)	160	160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9.19(일)~23(수)	160	245(+85)
제로페이 (8회)	-	1월~6월, 8월~9월	80	80
	* 예산 집행 일정 등을 고려, 9월까지 발행(상품권은 '26.12.15일까지 사용 가능)			

자료: 해양수산부

□ 2026년 2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0% 상승⁸⁵⁾(농축 수산물 물가 1.7% 상승)하고, 수입물가지수⁸⁶⁾는 총지수 145.39, 수산물에 대한 수입물가지수는 112.44로 소비자의 물가상승에 관한 부담이 상존하고 있으며, 중동 전쟁 이후 발표된 2026년 3월 소비자 심리지수⁸⁷⁾도 전월 대비 5포인트 하락하여 소비자의 구매 심리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85) 2026년 2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비교하여 2.0% 상승
(출처 : 국가데이터처, 2026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2026.03.06.))

86) 수입물가지수 총지수는 2025년 9월 135.56에서 2026년 2월 145.39이며, 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2025년 9월 106.01에서 2026년 2월 112.44로 지속적으로 상승
(출처 : 한국은행, 수출입물가조사_2026.03.29.기준)
*수입물가지수(Import Price Index)는 국내에서 수입한 상품·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2020년 물가기준을 100으로 보고 산정

87) 소비자심리지수는 2025년 9월 110에서 2026년 2월 112, 2026년 3월 107로 하락 전환하였으며, 전월대비 5포인트 하락은 계엄 이후 최대 하락치임(2024년11월 101 ⇒ 2024년 12월 88 (13포인트 하락))
(출처 :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_2026.03. 기준)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기상황, 전망 등을 조사해 경제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지수로 100을 기준으로 해 100 이상이면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낙관적이고, 100이하면 비관적인 의미

해양수산부는 유가 상승 등 글로벌 이슈로 인한 수산물 물가상승 및 소비심리 위축 방지를 위해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민생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 신속 집행으로 2026년 본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 집행을 위해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연내 집행가능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제고 세부사업의 집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2026년의 경우에도 하반기에 여름맞이 특별전, 추석 맞이 할인대전, 가을맞이 특별전, 김장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명절 및 계절별 할인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추경예산안의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2022~2026년) 세부사업 집행현황 】

(단위 : 억원, %)

연도	예산			집행액	
	본예산(A)	추경 등(B)	예산현액(A+B)	실집행액(C)	실집행률(%) (C/A+B)
2022년	218.28	210	428.28	617.69	144.2
2023년	660.28	-	660.28	1,591.86	241.1
2024년	1,337.73	-	1,337.73	1,335.71	98.0
2025년	1,000	530	1,530	1,440.75	94.2
2026년 (3월 말)	1,000	-	1,000	337	33.7

자료: 해양수산부

【 2026년 내내역사업별 집행현황 】

(단위 : 억원, 2026년 3월말 기준)

내내역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향후 집행 계획(본예산)
온·오프라인 유통사 할인	480	132	348	대한민국 수산대전(348억원)
대형마트	175	55	120	
온라인몰	175	38	137	
중소유통경로	130	39	91	
찾아가는 직거래장터	20	-	20	찾아가는 직거래장터(20억원)
전통시장	320	160	160	추석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160억원)
제로페이	80	20	60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발행(60억원)
지자체	10	-	10	지자체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10억원)
홍보운영비	90	25	65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운영비·홍보 등 (64억원)
계	1,000	337	663	

자료: 해양수산부

- 추경 편성의 효과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사업으로 신선 냉장 수산물에서 대체로 가격 안정화 효과⁸⁸⁾가 나타났고, 수산물의 소비진작 측면에서는 2024년 기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총 375억원, 전통시장에서는 449억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임.

88) 2015~2024년 가격 변동계수 분석 결과, 상기의 결과를 종합하여, 6개 주요 어종의 도매 및 소매가격의 사업 전후 변동계수 변화에 따라 가격 안정화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가격 안정화 정책의 효과는 어종·유통단계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고등어는 신선 냉장의 도매가격에서 사업 전 0.1797 대비 사업 후 0.1145로 변동계수가 하락하며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졌으나, 소매가격(신선 냉장, 냉동) 및 냉동 도매에서는 오히려 변동성이 증가함

-신선 냉장에서 가격 안정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냉동 제품보다 신선냉장의 수요가 높고, 이에 따라 할인 적용 품목에서도 신선 냉장 제품의 비중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됨 이는본 사업의 혜택이 수요가 많은 품목에 집중되며 가격 안정화 효과가 강화된 것으로 판단됨

남종오 등, 「2024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효과 분석」, 국립부경대학교(2025.4.)(해양수산부 발주 용역), p.88~89

또한, 수산물 수요증가를 통해 어업인 및 유통업자에게 589억원, 소비자에게 941억원의 편익이 발생하여 총 1,530억원의 사회적 후생이 증대된 것으로 분석되는바⁸⁹⁾,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 사업기간 동안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경감하고 수산물 판매를 진작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한편,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추경예산 편성으로 계획한 정책목표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수산물 소비 증가와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추경예산 편성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경의 상반기 조기 집행을 위해 사업별 재원 배분 비율을 재조정하고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 설계가 필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금번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온·오프라인 유통사 할인(대한민국 수산대전)의 경우 상반기 행사에 총 60억원, 7월 이후 하반기 행사에 총 140억원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89) ○ 유통사별 수산물 평균 원가율을 종합한 결과, 수산물의 평균 원가율은 약 75% 수준으로 추정됨. 이는 생산자 측면에서 볼 때, 수산물 매출액의 약 75%가 어업인에게 귀속되는 구조임을 의미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정한 생산자잉여의 증가는 단순히 유통사의 이익이 아닌 실질적으로 어업인의 소득 및 후생 증가로 이어지는 부분이 상당함을 의미함

○ 이는 본 사업이 소비자와 생산자 간 이중의 편익을 창출하는 구조적 효과를 지니며, 특히 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어업 활동 유지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함

남종오 등, 「2024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효과 분석」, 국립부경대학교(2025.4.)(해양수산부 발주 용역), p.120

환급행사의 경우 추경예산 85억원 전액을 추석에 집행할 계획으로 추경편성예산 상당 부분이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나,

이번 추경의 목적이 중동 전쟁 이후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수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을 통한 민생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동 전쟁에 따라 불안한 소비 심리를 시급히 회복하고 민생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수산대전 중 4월 수산인의 날 특별전에 15억원, 5월 가정의 달 특별전에 15억원에 증액 편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하반기 배정 예산을 조정하여 4월 및 5월에 추가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추석에 집행을 계획하고 있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추경 85억원)의 경우 하반기 집행으로 인해 금번 추경의 편성 방향⁹⁰⁾인 민생 안정을 위한 효과성, 신속한 집행가능성 측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90) 해양수산부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개요 p.3

2. 해양수산부 추경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

□ 추경 개요

○ (방향)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민생·경제 지원

* ① 고유가 부담 완화, ② 민생 안정, ③ 산업 피해 최소화

○ (기준) 목적에 부합, 높은 효과성, 신속한 집행가능성 위주로 검토

- 둘째,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민생안정이라는 추경편성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소비처가 전통시장 및 지역의 소규모 가맹점이 대상인 제로페이 및 지자체 상생할인 사업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고 사업 추진이 용이하다는 이유 등으로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지원에 상당부분의 예산이 편성(본예산 480억원+추경 200억원 증액)되어 있고, 제로페이(본예산 80억원, 추경 없음)와 지자체 상생할인 사업(본예산 10억원, 추경 없음)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액의 10% 미만이 편성되어 있는 바,

온·오프라인의 대형 유통업체 중심의 할인 정책에서 벗어나 전통시장 등 소규모 업체에서도 동일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수요, 사업별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향후 유통경로 및 단계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동 사업의 재원 배분 비율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020~2025년 수산물 상생할인 사업 참여 유통업체 매출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유통채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대형마트	61,470	96,574	151,279	119,359	131,989
중소업체	49	18,118	22,689	42,684	41,969
생협	-	11,236	6,099	9,836	9,404
온라인쇼핑몰	26,071	50,071	42,195	70,671	77,011
매출액(계)	87,590	175,999	222,262	242,550	260,373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 편집(출처 : 2024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효과분석 용역)

* 비고 : 전통시장(온누리환급, 제로페이)의 경우 2021년 추정매출액은 97억원에서 139억으로, 2024년 추정매출액은 1148억에서 최대 1640억원으로 나타남

해양수산부 연구용역에 따르면, 동 사업의 예산 투입 대비 유발된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3.13배에서 3.54배 수준의 매출 유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⁹¹⁾, 수산물 매출액의 평균 75%가 어업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로서 동 사업으로 인한 유통사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어업인의 소득 및 후생 증가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나,

91) ○ 본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예산 투입 대비 유발된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약 3.13배에서 3.54배 수준의 매출 유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 2024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은 총 119,777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375,213백만원에서 최대 424,430백만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음. 사업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유통사 할인 지원사업의 경우 총 71,925백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260,373백만원의 매출이 유발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전통시장 지원사업에서는 47,852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이에 따른 추정매출액은 약 114,840백만원에서 최대 164,057백만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예산 투입 대비 매출 효과는 약 2.40배에서 3.43배 수준으로 나타남

남종오 등, 「2024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효과 분석」, 국립부경대학교(2025.4.)(해양수산부 발주 용역)

본 연구용역에서는 유통사의 이익이 구체적으로 어업인에게 어느 정도 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통 경로 및 단계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동 사업의 내내역사업별 자원 배분 비율을 면밀하게 결정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산림청 소관]

I.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총수입 · 총지출

-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을 반영한 산림청의 2026년 총수입 규모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안 모두 4,368억원으로 동일함.

【 2026년도 산림청 소관 총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수입	2026년			
	본 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총수입	436,832	436,832	-	-
일반회계	101,956	101,956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11,066	311,066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3,810	23,810	-	-

※ 자료: 산림청

- ☐ 2026년도 추경예산안을 반영한 산림청의 2026년 총지출 규모는 본예산 3조 260억원 대비 20억원(0.1%) 증액된 3조 280억원임.

【 2026년도 산림청 소관 총지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

수입	2026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총지출	3,025,967	3,027,967	2,000	0.1
일반회계	1,693,811	1,695,811	2,000	0.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78,365	378,365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82,925	882,925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0,866	70,866	-	-

※ 자료: 산림청

2. 세입 · 세출예산안

- ☐ 2026년도 추경예산안을 반영한 산림청의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1조 2,394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

【 2026년도 산림청 소관 세입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수입	2026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합 계	1,239,365	1,239,365	-	-
일반회계	101,956	101,956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64,906	1,064,906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2,503	72,503	-	-

※ 주: 총계기준

※ 자료: 산림청

- ☐ 2026년도 추경예산안을 반영한 산림청의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4조 5,174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원(0.04%) 증가하였음.

【 2026년도 산림청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수입	2026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합 계	4,515,350	4,517,350	2,000	0.04
일반회계	2,495,016	2,497,016	2,000	0.0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64,906	1,064,906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82,925	882,925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2,503	72,503	-	-

※ 주: 총계기준

※ 자료: 산림청

3. 세부사업 주요 변동 내역

□ 산림청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1개 세출 사업을 2026년도 본예산 대비 20억원 증액하였음.

【 2026년도 산림청 소관 추경안 세출 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

회계	세부사업명	2025년 본예산	2026년			
			본예산 (A)	추경안 (B)	증감 (B-A)	(B-A) /A
총 계		93,858	193,826	195,826	2,000	1.0
일반회계	산림헬기 도입·운영	93,858	193,826	195,826	2,000	1.0

※ 주: 총계 기준

※ 자료: 산림청

II. 검토의견

1. 총괄

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

(1) 편성 배경

□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취약계층 부담 가중, 내수·고용 부진 및 수출·산업 위축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저소득·소상공인·청년 등 민생 안정 지원, 직접 타격을 받는 피해 기업·산업 지원 및 공급망 안정 등을 중심으로 한 추경예산안을 마련하였음.

□ 산림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으로 부족한 산림헬기 항공유 구입을 통해 적기·선제적 산림재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음.

(2) 편성 주요 내용

□ 항공유 인상, 가동 헬기 증가 등에 따른 항공유 부족분 구입을 위한 ‘산림헬기 도입·운영’ 예산이 20억원 증액되었음.

【 2026년도 산림청 소관 추경안 세출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

회계	세부사업명	2025년 본예산	2026년				
			본예산 (A)	집행액 현황 (3월 기준)	제1회 추경안 (B)	증감 (B-A)	(B-A)/ A
일반 회계	산림헬기 도입·운영	93,858	193,826	70,272	195,826	2,000	1.0
	항공유 구입	3,517	2,638	1,598	4,638	2,000	75.8

※ 주: 총계 기준

※ 자료: 산림청

2)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에 대한 검토

□ 추경예산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89조⁹²⁾에 따르면,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야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

92)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한편,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목적적합성,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집행가능성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일반요건】

구분	요건	세부내용
1	목적적합성	추경예산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2	예측불가능성	추경예산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3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4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5	연내집행가능성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예산안을 구성할 것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 p47)

□ 정부의 추경예산안 편성 개요를 보면, 중동전쟁으로 야기된 유가 상승 및 경기침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등 국·내외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추경의 편성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국가재정법」상 ‘전쟁 발생’ 및 ‘경기침체’ 등에 근거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제출한 것으로 보임.

산림청 편성 추경예산안 역시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에 따른 산림헬기의 항공유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 편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짐.

추경예산안 편성 예산의 예측불가능성 및 연내집행가능성 여부 등은 이하에서 주요사업별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산림헬기 도입·운영

- 산림청은 항공유 구입 예산에 대하여 산불 발생 추세, 헬기 가동률 변화 등 주요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과 안정적인 본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산림청은 항공유 단가 인상분이 3월부터 12월까지 일괄 반영된 만큼, 중동전쟁의 종전 시기 등에 따라 국제유가가 하락할 경우 집행잔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내집행가능성 확보뿐만 아니라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유가 변동 상황을 고려한 사업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1) 사업 개요

□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⁹³⁾은 산림재난(산불, 산사태복구 등) 대응을 위하여 산림헬기를 도입 및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인 20억원이 증액된 1,958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
산림헬기 도입·운영	93,858	193,826	195,826	2,000	1.0
항공유 구입	3,517	2,638	4,638	2,000	75.8

93) 회계(기금)-세부사업: 일반회계-산림헬기 도입·운영(2333-300)

(2) 검토의견

(가) 항공유 구입 예산은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과 안정적인 본예산 편성 필요

□ 내역사업인 ‘항공유 구입’은 산불의 조기진화 및 산림재난 모니터링 등 효율적인 산림자원보호와 산림재난방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산림 헬기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항공유 구입비용으로, 2026년도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0억원(75.8%) 증액된 46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추경예산안 산출 내역을 보면, 항공유 유가 인상분 11억 3,500만원(36대), 불가동 헬기 감소에 따른 유가 반영분 7억 3,400만원(7대), 국외임차헬기 유가 반영분 1억 3,100만원(5대)으로 총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2026년도 항공유 구입 추경안 산출근거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안	산출근거	비 고
'26년 본예산 (당초 항공유 소요액)	2,638	산림헬기 36대 운영(36대×73백만원) * ('25) 35억(48대)→('26) 26억(36대)	o 당초 총 50대 중 36대 가동 예상 - 러시아 KA-32 헬기 29대 중 14대가 러·우사태로 불가동 상태 예측
유가 인상분	1,135	산림헬기 유가 인상분(36대) * 36대 X (104.8백만원 ⁹⁴⁾ - 73.26백만원 ^{기반영 단가})	o '26.3월 1,048.04원/ℓ → 4월 1606.12원/ℓ 상승 예상(558.08원, 53.2%)
불가동 헬기 감소	734	KA-32 가동헬기 증가(36→43대) * 7대 ^{KA-32} X 104.8백만원	o 공군헬기 부품 관리전환 등을 통해 당초 불가동 헬기 감소(14→7대)
국외임차헬기	131	봄철 단기(3개월) 국외임차헬기 * 5대 X 104.8백만원 X 0.25 ^{3개월}	o 중형 임차헬기 5대 운영('26.2.8.~4.30.) - '25년도 제2회 추경에서 예산 반영 (본회의 의결: '25.7.4.)

※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 2026년 2월 시작된 중동전쟁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유가는 항공유를 사용하는 산림헬기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최근 국제유가는 2025년 평균 69.36\$/Bbl 대비 2026년(3.11. 기준) 119.55\$/Bbl로 급증하였으며,

【 최근 5년간 국제유가 및 항공유 가격 현황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국제유가(\$/Bbl) (원유)	96.41	82.10	79.58	69.36	119.55
항공유(원/ℓ)	1,239.53	1,119.52	1,077.01	1,017.24	1,606.12

※ 주: 국제유가 출처는 오피넷(www.opinet.co.kr) 기준(두바이유)으로 작성됨. 국제유가는 '26년 3월 중에도 증가 추세임. (3.11) 119.55\$/Bbl → (3.24) 157.03\$/Bbl)

※ 자료: 산림청

항공유의 2026년 3월 예상 단가는 1,048.04원/ℓ 이었으나, 4월 예상 단가(3.1.~3.11. 평균 단가)는 1,606.12원/ℓ 로 약 53%(리터당 558.08원) 상승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항공유 구입 예산의 부족으로 산림헬기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임.

94)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2년~'25년) 실제 평균사용량(대당 평균 7만 ℓ, 약 82백만원)에 유가 상승률(153%)과 유가 상승 전(2달) 기간을 제외하여 단가를 산정함.

【 항공유 예상 단가 】

□ 지역별 단가조정 내역 (단위 : 원)					
업체별	구분	2월 단가(A)	3월 단가(B)	인상액 (C=B-A)	인상률 (D=C/A*100)
슈프림에너지	청양납품가	951.87	1004.76	52.89	5.55
한유	청주출하가	1058.34	1111	52.66	4.97
	청주할공기가	1113.34	1166	52.66	4.72
	원주납품가	952.73	1005.38	52.65	5.52
	익산납품가	948.33	1000.98	52.65	5.55
	양산납품가	953.83	1006.48	52.65	5.51
	영암납품가	963.73	1016.38	52.65	5.46
	안동납품가	953.83	1006.48	52.65	5.51
	진천납품가	942.83	995.48	52.65	5.58
	합안납품가	953.83	1006.48	52.65	5.51
한국공항	울진납품가	970.33	1022.98	52.65	5.42
	김해출하가	1075.88	1128.79	52.91	4.91
	김해할공기가	1096.57	1149.48	52.91	4.82
	제주출하가	1077.02	1129.88	52.86	4.90
세일로	제주할공기가	1104.54	1157.40	52.86	4.78
	서울납품가	957.13	1009.78	52.65	5.50
	서울출하가	957.13	1009.78	52.65	5.50
	서울할공기가	957.13	1009.78	52.65	5.50
	강릉납품가	960.04	1012.68	52.64	5.48
합 계	평균 단가	995.33	1,048.04	52.71	5.29

구분	금 액
MOPS	395.00
정유사비용	6.00
기금	4.14
관세	4.70
품질검사수수료	0.12
계 (센트/갤런)	409.96
환율(원/달러)	1,483.00
제품대 (원/갤런)	6,079.71
(원/리터)	1,606.12

3월 항공유 단가 1,048.04원	4월 항공유 예상 단가 1,606.12원 (리터당 588.08원, 53.2% 상승)
----------------------------	---

※ 주: 항공유 공급 민간업체 제출 자료를 근거로 작성

※ 자료: 산림청

□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부족한 산림헬기의 항공유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고, 당초 부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2026년 가동중단이 예상된 불가동 헬기 대수 감소분(14대 → 7대)⁹⁵⁾과 국외임차헬기(5대)의 운영을 위한 항공유 추가분을 편성하였음.

95) 산림청은 2026년 불가동 헬기(러시아 KA-32) 대수가 당초 14대에서 7대로 변경되었으며, 변경사유는 공군 KA-32 헬기 5대의 불용에 따른 관리전환 부품 활용 및 KA-32 헬기 운용사의 예비부품 구매를 통해 불가동 대수가 감소한 것으로 설명함.

【 2026년 산림헬기 보유 현황 】

기종별 구분	대형(8대)		중형(32대)		소형(10대)	
	S-64	CH-47	KA-32	KUH-1	Bell-206	AS-350
생산국	미국	미국	러시아	대한민국	미국	프랑스
물탱크 장착 후 운용 속도	178km/h	259km/h	148km/h	241km/h	161km/h	148km/h
체공시간	150분	159분	160분	200분	200분	200분
담수량	8,000 ℓ	10,000 ℓ	3,000 ℓ	2,000 ℓ	600 ℓ	800 ℓ
보유대수(총 50대)	7대	1대	29대	3대	7대	3대

※ 자료: 산림청

□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편성의 일반
요건으로서,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사유인
예측불가능성을 충족할 필요가 있음.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기후재난의 영향으로 산불이 대형화·동시
다발화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으며, 연평균 산불피해면적도 2010
년대(2010~2019년, 857ha)에 비해 2020년대(2020~2025년, 23,118ha)
에는 약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역대 최대 산불이 발생한
2025년의 경우 산불피해액이 약 6조 7,229억원⁹⁶⁾에 달하는 등 산불
의 위험성과 피해 규모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96) 산림청 통계 기준 2025년 산불피해액(6조 7,229억원): 2025년 3월 영남지역 초대형산불 5조 8,800억원
(재산피해액 1조 800억원, 진화비용 4,000억원, 공익 피해액 4조 4,000억원), 기타 산불(458건) 피해액
8,429억원

* 공익 피해액: 산림으로 인한 산소 공급, 수원함양, 환경보전, 국민건강휴양 등 공익적 가치 비용

아울러 산불재난 대응 과정에서 산림헬기의 현장 투입 대수 및 비행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가 발표한 「산불 종합대책('25.10.22.)」에서도 가용자원의 총동원과 초동진화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산림헬기의 출동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⁹⁷⁾

【 최근 4년간 산불발생 시 산림헬기 투입 대수 현황 】

(단위: 건,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산불 발생(A)	756	596	279	459
헬기 투입 대수(B)	929	660	191	782
건당 투입 대수(B/A)	1.2	1.1	0.7	1.7

※ 주: 비행시간 추세 ('25.1~2월) 673시간 → ('26.1~2월) 1,502시간(증 829시간)

※ 자료: 산림청

이를 반영하듯, 최근 5년간 산림헬기 항공유 구입 예산은 2024년⁹⁸⁾을 제외하고 매년 부족분에 대한 이·전용 등(세목변경 포함)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현재 항공유 구입 예산액 26억 3,800만원의 60.5%인 15억 9,800만원이 집행됨.

97) 이와 같이 산불의 대형화 및 대응 수요 증가는 이미 중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온 구조적 변화로 볼 수 있는 만큼, 항공유 수요 증가 역시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 가능하였던 요소로 평가될 수 있음.

98) 2024년의 경우 산불발생 및 피해면적 감소

* 산불피해면적 : '21년(766ha), '22년(24,797ha), '23년(4,992ha), '24년(132ha), '25년(105,099ha)

【 최근 5년간 항공유 구입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
2022	3,024	2,757	5,781	5,781	191.1
2023	3,517	600	4,117	4,117	117.0
2024	3,517	△112	3,405	2,046	58.1
2025	3,517	987	4,504	4,488	127.6
2026. 3.	2,638	-	2,638	1,598	60.5

※ 주1: 이·전용 등은 세목변경을 포함함.

※ 주2: 항공유 구입 예산은 2022년 코로나19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2023년에 유류비가 증액(전부처 공통사항)되었으며, 2025년까지 동일한 예산액이 반영됨.

※ 자료: 산림청

그럼에도 정부는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산불 대응 및 항공유 수요 증가에 대한 고려 없이 헬기 가동중단 대수(14대)만을 반영하여 오히려 전년대비 예산액의 25%(879백만원)를 감액하였으며,⁹⁹⁾ 이는 산림헬기 운용 확대라는 명확한 수요 증가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채 본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의미함.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불가동 헬기 대수 감소분(7대) 운영을 위한 항공유 구입비(734백만원)는 공군과의 부품 활용 협의가 2025년 7월부터 있었으므로 본예산 감액 편성 시 고려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¹⁰⁰⁾

99) 2025년 제1회 추경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산림청은 KA-32헬기 가동중단 예측 및 현황 자료에서 헬기 가동중단 대수는 산불 발생빈도, 유관기관부품 관리전환, 부품 내자조달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음.

100) KA-32 헬기 관리전환 부품 활용을 위하여, 산림청은 2025년 7월 24일 공군에 관리전환 검토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됨.

국외임차헬기 운영 예산(131백만원)도 2025년 제2회 추경(7.4 본회의 의결)에서 임차료만 반영된 만큼, 2026년 본예산에 항공유 편성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

- 이처럼 불가동 헬기 감소 및 국외임차헬기 추가소요는 이미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부터 충분히 인지 가능하였던 요소로,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예산 추계의 부정확성을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유가 상승이라는 외부 요인을 계기로 편성되었으나, 유가 인상분 반영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산불 대응 수요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 본예산 편성의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이 큰 만큼,

향후 항공유 구입 예산에 대해서는 산불 발생 추세, 헬기 가동률 변화 등 주요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과 안정적인 본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나) 향후 유가 변동 상황을 고려한 사업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 정부가 제출한 항공유 구입 내역사업의 추경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항공유 단가는 기존 7,326만원에서 1억 480만원으로 43% 증가하였고, 국외임차헬기(3개월분)를 제외하고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항공유 단가 인상분(불가동 헬기 감소 포함)을 3월부터 12월까지 일괄 반영하고 있음.¹⁰¹⁾

이는 중동전쟁의 종전 시기 등에 따라 국제유가가 하락할 경우 집행잔액(불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동 사업은 추경 요건인 연내집행가능성 확보뿐만 아니라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유가 변동 상황을 고려한 사업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101) 【 2026년도 항공유 구입 추경예산안 산출근거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안	산출근거	비 고
유가 인상분	1,135	산림헬기 유가 인상분(36대) * 36대 X (104.8백만원 - 73.26백만원 ^{기반영 단가})	o '26.3월 1,048.04원/ℓ → 4월 1606.12원/ℓ 상승 예상(558.08원, 53.2%)
불가동 헬기 감소	734	KA-32 가동헬기 증가(36→43대) * 7대 ^{KA-32} X 104.8백만원	o 공군헬기 부품 관리전환 등을 통해 당초 불가동 헬기 감소(14→7대)
국외임차헬기	131	봄철 단기(3개월) 국외임차헬기 * 5대 X 104.8백만원 X 0.25 ^{3개월}	o 중형 임차헬기 5대 운영('26.2.8.~4.30.) - '25년도 제2회 추경에서 예산 반영 (본회의 의결: '25.7.4.)

※ 주: 유가 인상분 단가(104.8백만원)는 최근 5년간('22년~'25년) 실제 평균사용량(대당 평균 7만ℓ, 약 82백만원)에 유가 상승률(153%)과 유가 상승 전(2달) 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함.

※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